

- (1) 공개를 통해 정당한 국가안보 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 (2)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원칙 16 : 공무원 (Government Servants)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누구도 그가 정부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정보의 공개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이익 당해서는 아니된다.

원칙 17 : 공개된 정보의 검열금지 (No Censorship of Published Information)

비록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단 정보가 널리 공개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원칙 18 : 취재원의 보호(Protection of Journalists' Sources)

국가안전보장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취재원의 비밀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 19 : 제한된 영역에의 접근(Access to Restricted Areas)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취지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a)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기준의 준수에 대한 감시를 수임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나 정부간기구의(IGO) 대표가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져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b) 정부는 언론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명백히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폭력과 무력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언론인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IV. 적법절차와 기타 문제들(Due Process and other matters)

*** 적법절차의 보장(Due Process Protections)**

원칙20 : 일반적인 적법절차의 보장 (General Due Process Protection)

표현 및 정보와 관련하여 안보관련범죄(security-related crime)⁸⁾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국제법의 일부인 적법절차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적법절차의 보호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a) 무죄추정의 권리,
- (b)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 (c) 즉시 기소내용과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 (d) 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 (e) 합리적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 (f) 변론을 준비할 적절한 시간을 가질 권리,
- (g)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 내지 심판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 (h)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검토할 권리,
- (i) 반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피고가 정보를 알게된 경우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거부할 권리, 그리고
- (j) 법과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결정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항고할 권리.

원칙 21 : 구제 (Remedies)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내지 amparo와 같은 특별구제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제수단은 원칙3에서 규정된 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중에도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2 : 독립된 심판기관에 대한 권리 (Right to an Independent Tribunal)

형사기소된 안보관련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배심제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배심에 의해, 그밖에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법원에 의해 재판받아야 한다.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한 법원에 의한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독립된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원칙 23 : 군사법정 및 특별법정 (Military and Ad Hoc Courts)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은 안보관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나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이나 군인은 임시 또는 특별히 구성된 국가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8) 등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관련범죄"는 정부의 범죄주장이 국민 내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이다.

원칙 24 : 사전검열(Prior Censorship)

표현은 원칙 3에서 제시된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외에는 국가안보보장을 이유로 사전검열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 25 : 불균형적 형벌(Disproportionate Punishments)

개인, 언론매체, 정치단체 및 기타 단체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와 관련한 안보관련범죄로 인해 실제범죄의 심각성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규제, 강제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 26 : 기타 기준들과의 관계 (Relation of these Principles to other Standards)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법, 지역법, 국내법 및 기준에 인정된 인권 내지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미국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실제

장호순(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언론학 박사)

1. 머리말

미국의 근대 국가보안법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 급격히 늘어난 과격 공산주의자, 노조운동가, 무정부주의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많은 주 정부가 과격 좌익분자들이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 전복을 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었고 미국 연방 대법원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이러한 법들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연방의회가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만든 스미스 법(Smith Act)과 1950년에 제정된 국내 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고, 이밖에 공산당원의 활동을 규제하는 군소법안들이 1950년대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1956년 연방대법원이 국가보안은 연방정부의 고유의 권한으로 더이상 주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스미스법과 국내안전법이 좌익선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국가보안법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지난 30년간 발동된 적이 없다. 반공의 선풍이 몰아치던 1950년대에도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미국내의 공산당원을 처벌, 규제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국내안전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태이고 스미스법에도 아직 미국 형사법전(U.S. Criminal Code)에 원형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그 적용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미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비교적 제 구실을 하여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국가보안법이 무리하게 권력자에 의하여 남용되어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미국에서는 흔치 않았다.

미국의 연방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과 이의 집행,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한다.

2. 스미스 법(Smith Act)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미국 사회에도 빈부의 격차와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과 고용자, 정부와의 마찰이 격화되었다.

지방자치제가 깊게 뿌리내린 미국은 20세기 초까지 좌익에 대한 대응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여러 주에서 폭력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선동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1920년대까지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법들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지키려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로서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 연방대법원을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당시 미국사회의 분위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의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붕괴를 맞보면서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누그러져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2차대전 발발 직전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가 비밀리에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이 알려지자 미국인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국 공산당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1939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공산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총 300여명의 공산당원들이 체포되었고 시민권이 없는 많은 공산당원들에게 국외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미국사회가 반공의 열풍에 휩싸여 있던 1940년 연방의회는 주로 공산당을 겨냥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소위 스미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전복을 직접 시도하거나 선동, 교사하는 것을 금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모의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또 불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출판하거나 출판물을 판매,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스미스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20,0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스미스법은 의회 통과 후에도 즉시 적용되지 않았다. 1940년 여름 갑자기 몰아쳤던 미국내의 반공 열풍은 1941년 6월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독-소 동맹이 깨지고 소련이 다시 연합국 측에 서게되면서 쉽게 식어버렸다. 미국과 소련이 공통의 적과 전쟁을 하게되면서 소련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소련군이 막강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모스크바를 방어하게 되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소련에 대한 동정심이 되살아났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게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미국 내 공산당에 대한 탄압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스미스법도 필요가 없는 듯 하였다.

스미스법이 실효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였다. 미소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때까지 용인되었던 공산당이나 그 지지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크게 강화되었다.

공산당을 간첩 내지 반역자로 몰아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미국사회에서 높아갔다. 선거 때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적을 공산주의자와 연계시키고 자신의 보다 강력한 반공 이미지를 굳히려 애를 썼고 결국 4만명에 지난지 않는 군소정당이었던 공산당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48년 6월 미국 법무부는 12명의 공산당 간부를 스미스법 위반혐의로 대배심원(Grand Jury)의 승인을 얻어 기소하였다. 공산당 간부들에게 내려진 혐의는 1945년 미국 공산당을 재조직하면서 폭력공산혁명을 기도하려는 단체를 조직하려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무려 9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스미스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피고인 전원에 유죄 평결을 내렸고 1951년 6월 미국 대법원도 Dennis U. United States에서 이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을 쓴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은 미국이 공산국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조직되고 훈련된 당원을 거느린 공산당의 정부전복음모는 결코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촉즉발의 세계정세, 외국에서의 공산당 간부들의 정부전복 기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 공산당은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다"라고 선언한 빈슨 대법원장은 "지금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빈슨 대법원장은 현재의 공산당의 사상이나 표현은 다른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의 표현과는

달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에 적용하던 명백히 상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기준은 공산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표현에 국한되어야 하며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적용할 기준은 명백히 상존하는 위험이 아니라 명백히 예측할 위험(clear and probable danger)으로 바뀌어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반대의견을 제출한 휴고 블랙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하여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개인의 신분이나 그 표현내용에 관계 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그 사상이나 표현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수정헌법 1조가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표현만을 보호한다면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블랙 대법관은 선언했다.

또 다른 반대의견을 제출한 윌리엄 더글라스 대법관은 공산당 처벌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가 공산당 이론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공산당을 지지하는 미국인을 거의 없게 만들었고, 또 현재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공산당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 간부들을 처벌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더글라스 대법관은 주장하였다.

반공에 대한 열기가 미국 전역에 가득찼던 1951년에 내려진 Dennis U. United States 판결은 대부분의 미국인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판결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불과 6년 만에 사실상 번복되는 운명을 맞았다. 1957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Dennis U. United States 판결 이후 검거된 2진급 미국 공산당 간부에 대한 스미스법 위반 혐의를 다룬 Yate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된 원심을 파기, 송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정부전복을 위한 행동을 취했다는 증거 없이 단순히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나 추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친 것만으로는 스미스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스미스법은 언제나 미래에 정부의 폭력전복을 행동으로 시도하거나 선동, 혹은 교사했을 경우에만 저촉되는 것이라고 재해석하여 스미스법을 통한 공산당의 처벌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1961년에 대법원은 단순히 공산당에 가담했던 사실만을 가지고는 스미스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또 다른 피고인에게는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반정부 단체의 가입은 형식적이거나 이론적인 동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Yates v. United States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정부전복을 기도했거나 이를 선동, 교사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공산당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당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드러난 한 공산당 간부에게는 유죄를 확정 후 바로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스미스법은 아직도 미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1961년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은 채 사문화된 상태이다. 연방 대법원이 스미스법의 적용범위를 정부의 전복을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범했을 경우나 이를 직접 선동, 교사했을 경우로 확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지를 최소화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또 1950년대의 가

혹한 탄압으로 미국 공산당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1960년대 이후 미국내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이 사라지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들을 처벌하거나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스미스법이 유명무실해진 이유이다.

3.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에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이 크게 고조되자 스미스법만으로는 미국내의 공산당과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면서 미국은 좀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좌익규제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가 1950년에 제정된 국내안전법이었다. 스미스법이 1940년 큰 논란없이 입법된 것에 비해 국내안전법은-일명 맥카란법- 3년이 넘게 연방의회와 미국정계, 학계 등에서 많은 찬반논쟁을 일으켰다.

국내안전법을 둘러싼 논쟁이 오래 계속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공산당을 규제해야 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그 처벌이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보수정치인들은 공산당 자체를 불법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장인 J. 에드가 후버가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만들면 지하로 잠입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연방수사국의 감시와 침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1950년 연방의회는 공산당의 활동을 공개토록 하고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제하는 국내안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국내안전법의 서문은 공산주의 운동의 목적이 기만과 폭력을 통해 전세계에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려는 것이고, 미국내의 공산주의자들도 세계공산적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자유에 명백히 상존하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국외의 전쟁과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통해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공산당을 방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의회가 밝히 국내안전법의 입법근거였다.

국내안전법은 공산주의 단체를 공산활동단체(Communist Action Organization)와 공산전선단체(Communist Front Organization) 두가지로 분류하여 이 단체들의 법무부 등록을 의무화시켰다. 공산활동단체는 미국 공산당처럼 외국 정부나 외국 공산단체로부터 지시, 지배, 지휘를 받는 단체이며, 공산전선단체는 공산활동단체로부터 지배를 받는 단체, 혹은 공산활동단체나 국외의 공산단체나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인 단체로 규정되었다. 한 단체를 공산활동단체나 공산전선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전복활동 통제기구(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ard)가 청문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단체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한 단체가 공산활동단체로 판정되면 이 단체는 법무장관에게 간부와 회원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공산전선단체로 판정되면 간부들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단체들은 정치헌금 수령, 경비지출 등의 재정상태와 소유하고 있는 인쇄, 복사 시설 등도 법무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등록명령을 위반한 단체에게는 최고 10,000 달러의 벌금, 개인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단 공산활동단체나 공산전선단체로 등록하면 그 회원들에게는 여러가지 규제가 뒤따랐다.

우선 연방정부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외국여행도 금지되었다. 또 이러한 단체에게는 정당이나 공익단체에 허용되는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국외추방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단체에 의해 발송되는 우편물이나 방송내용에는 공산당 관련단체 제공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하였다.

공산단체 등록조항 이외에도 국내안전법은 외국의 침략이나 전쟁, 혹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지원을 얻어 반란이 일어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간첩행위나 사보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진주만 폭격 이후 미국 내의 일본인 2세를 강제수용시킨 경험을 되살린 것이었다. 비록 국내안전법은 압도적인 표차로 연방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적지않은 미국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우선 이 법이 개인이나 단체가 실제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거나 반역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이 처벌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죄형법정주의(Bill of Attainder)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복잡한 등록규정과 청문회, 사법절차 등을 공산당이 지연전술에 이용할 것이 뻔하여 이 법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단순히 공산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자, 노조, 민권운동단체 등 합법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내안전법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트루만 대통령이었다. 트루만은 국내안전법이 "사상통제"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는 기존의 법이 공산당을 충분히 감시,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그 적용범위가 모호한 국내안전법은 애국시민들의 합법적인 언행이나 정치활동마저 규제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보수정책에 반대하여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트루만은 주장하였다.

트루만은 공산당과 같이 미국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소수정치집단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까지도 보장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입는다고 역설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비판을 보장하고 비판은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트루만은 주장하였다. 국내안전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과 미국이 세계제일의 자유국가라는 미국인들의 주장이 위선임을 보여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전술에 역이용당할 것이라고 트루만은 경고했다. 그러나 자유와 관용을 촉구한 트루만 대통령의 탄원도 미국인의 뜨거운 반공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트루만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안전법은 즉시 의회에서 재가결되어 1950년 9월 23일 법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예상한대로 국내안전법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10여년이 넘게 끄는 지루한 행정적, 법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1950년 11월 법무부장관은 국내안전법에 의해 신설된 반역행위통제기구에 공산당을 공산활동단체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반역행위통제기구의 공산당 청문회는 51년 4월부터 1952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 정부측과 공산당측에서 제출한 관련서류만 해도 15,000 페이지가 넘었고 증거로 제시된 문서만 해도 507종이었다. 결국 1953년 4월 공산당은 공산활동단체로 규정되었고 법무부에 등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산당은 이 등록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안전법이 통과한 지 10년이 넘게 지난 1961년 6월이었다.

Communist Party v. 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ard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내안전법의 공산활동단체 등록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산당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지하에 숨지 못하게 하게 일반국민에게 공개토록함으로써 선량한 애국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산당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절하게 만든 법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하였다.

Denni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스미스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블랙 대법관은 국내안전법마저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고결한 이상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국내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블랙은 질타하였다. "가장 미국적인 방법은 공산당원들과 같은 불만분자들이 자유로이 그들의 정치사상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모든 미국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블랙 대법관은 역설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도 공산당의 등록을 강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일단 대법원으로부터 등록규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등록을 거부한 공산당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공산당이나 개인이 국내안전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할 경우 공산당이 정부의 폭력전복을 꾀하는 범죄단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스미스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고백을 강요할 수 없게한 수정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공산전선단체로 등록이 강요된 두 단체에 관한 판결에서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등록요구를 무효화시켰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국내안전법에 따라 공산단체의 법무부 등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내안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의회는 등록의무 조항을 없애고 반역행위 통제기구 자체에서 공산단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반역행위 통제기구는 1968년 12월 31일자로 소멸하였다.

공산단체 등록조항의 국내안전법 조항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1964년 대법원은 공산당원들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국내안전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공산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공산활동단체 가입자의 방위산업체 근무를 불법으로 한 조항도 수정헌법 1조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모든 공산당원을 동등하게 반역행위자로 분류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정부전복을 기도했거나 이를 선동한 사람들만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거듭 밝혔다. 또 비상사태시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정부가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내안전법 조항은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이 1971년에 삭제되었다.

4. 미국 국가보안법 운영이 한국에 주는 의미

스미스법과 국내안전법 외에도 미국연방의회는 공산당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다. 1954년 연방의회는 공산당원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공산당원은 노조간부가 될 수 없게 만든 법도 1958년에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법들도 역시

정치인들의 반공입장 과시용에 그쳐 실제로는 적용되지도 못하거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결국 미국의 각종 국가보안법들은 국내 반공의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었으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비교적 충실했던 미국의 연방법원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연방법원의 엄격한 판결 때문에 스미스법이나 국내안전법은 입법부가 의도한대로 공산당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공산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재정적 역량을 법정방어에 소모하여 1950년대 후반에 정치적으로 붕괴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트루만 대통령이 국내안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예상한대로 공산당보다는 미국 국민들 전체에 더 커다란 해를 입혔다.

냉전의 강풍이 몰아치던 1950년대 미국사회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교환과 정책비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공산주의자로 몰리거나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 자본주의의 병폐를 시정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점진적 진보주의자들이 미국 정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오직 반공, 보수의 목소리만 미국사회에서 허용되었고 그 결과 미국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으며 미국사회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950년대에 씨를 뿌린 무리한 군비확장, 월남전 참전 등에 의한 미국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1990년대의 미국정부가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는 주된 이유이다. 현재 미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종차별과 이로 인한 범죄와 마약 문제도 1950년대와 1960년대 인종차별 철폐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임으로 인해 본질적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미국사회는 병들어 있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제논란에도 미국 역사의 경험을 거울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측이 '현재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리'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적용범위를 미국처럼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동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 선동행위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라도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그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때만 법을 국가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조건이나 정서를 감안할 때, 이 법의 폐지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운영이 더욱 시급히 요구된다.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

시행 1952. 7. 21.(부칙)

개정 1952. 법 268, 1954. 법163, 1962. 법140, 법161, 1993. 법 89

제1장 총칙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법규 조치를 규정함과 동시에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한 형벌 규정을 보정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의 해석 적용)

제2조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중대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있어서만 적용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규제의 기준)

제3조 ① 이 법률에 의한 규제 및 규제를 위한 조사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만 행하여야 하며 만일 권한을 일탈하여 사상, 종교, 집회, 결사, 표현 및 학문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 단체 활동의 권리 그 밖에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이 법률에 의한 규제 및 규제를 위한 조사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그 외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이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의)

제4조 ① 이 법률에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은 다음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一. ㄱ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77조(내란), 제78조(내란의 예비, 음모), 제79조(내란 등의 원조), 제81조(외환 유치), 제82조(외환 원조), 제87조(외환 유치 및 외환 원조의 미수) 또는 제88조(외환유치 및 외환 원조의 예비, 음모)에 규정된 행위를 행하는 것.

ㄴ ㄱ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는 것.

ㄷ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행위의 선동을 하는 것.

ㄹ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82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한 문서 또는 도면을 인쇄, 배포 또는 공공연히 게시하는 것.

ㅁ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무선 통신 또는 유선 방송에 의해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신을 하는 것.

二. 정치상의 주의 및 시책을 추진,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것.

ㄱ 형법 제106조(소요)에 규정된 행위

ㄴ 형법 제108조(현주 건물 방화) 또는 제109조 제1항(비현주 건물 방화)에 규정된 행위

ㄷ 형법 제117조 제1항(격발물 파열)에 규정된 행위

ㄹ 형법 제125조(기차, 전차 등 왕래 위험)에 규정된 행위

ㅁ 형법 제126조 제1항 또는 제2항(기차, 전차 등의 전복 등)에 규정된 행위

ㄴ 형법 제199조(살인)에 규정된 행위

ㅅ 형법 제236조 제1항(강도)에 규정된 행위

ㅇ 폭발물 단속 처벌(1884년 太政官 布告 제32호) 제1조(폭발물 사용)에 규정된 행위

ㅈ 검찰 또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것을 보조하는 자, 법령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흉기 또는 독극물을 사용, 다중공동하여 행하는 형법 제95조(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에 규정된 행위

ㅊ ㄱ에서 ㅈ까지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예비, 음모 또는 교사 하거나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행위의 선동을 행하는 것.

② 이 법률에서 「선동」이란 특정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면, 언동에 의해 타인에게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겨 있는 결의를 조장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단체」란 특정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지속적인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단, 어떤 단체의 지부, 분회 그 외의 하부 조직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 법률에 의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파괴적 단체의 규제

(단체활동의 제한)

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의 활동을 행하는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음에 기재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단, 그 처분은 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一.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에서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각각,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 집회를 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

二.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기관사지(단체가 그 목적, 주의, 방침 등을 주장, 통보 또는 선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사지를 계속해서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것.

三.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여한 특정 역·직원(대표자, 주요간부 그외 명칭의 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를 위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② 전항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동항 제 3호의 처분이 효력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역직원 또는 구성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통상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탈법행위의 금지)

제6조 전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해산 지정)

제7조 공안심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단체가 계속적이거나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할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 지정을 행할 수 있다.

- 一. 단체 활동으로서 제4조 제1항 제1호에 기재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
- 二. 단체 활동으로서 제4조 제1항 제2호 ㄱ에서 ㄴ까지 기재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교사 또는 이것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선동하여 이것을 행한 단체

(단체를 위해 하는 행위의 금지)

제8조 전조의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후는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행해진 날 이후 해당 단체의 역·직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해당 단체를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단, 그 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 또는 해당 단체의 재산이나 사무 정리에 통상 필요로 하는 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탈법행위의 금지)

제9조 전조에 규정된 자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재산의 정리)

제10조 ① 법인에 대해 제7조의 처분이 소송 절차에 의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법인은 해산한다.

② 제7조의 처분이 소송 절차에 의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된 때는 해당 단체는 신속히 그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③ 전항의 재산 정리가 종료되었을 때는 해당 단체의 역직원이었던 자는 그 전말을 공안조사청 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제3장 파괴적 단체의 규제 절차

(처분의 청구)

제11조 제5조 제1항 및 제7조의 처분은 공안조사청장관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행한다.

(통지)

제12조 ① 공안조사청장관은 전조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단체가 사건과 관

련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기일 7일 전까지 해당 단체에게 처분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유의 요지 및 변론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관보로 공시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 했을 때에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간부의 주소 또는 거처를 알고 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외에도 통지서를 송부해야만 한다.

(대리인)

제13조 전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단체는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그 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의견의 진술 및 증거의 제출)

제14조 해당 단체의 역·직원, 구성원 및 대리인은 5인 이내에 한하여 변론 기일에 출두하여 공안조사청장관이 지정하는 공안조사청의 직원(이하 「수명직원(受命職員)」이라 함)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며 또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방청)

제15조 ① 해당 단체는 5인 이내의 입회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당 단체가 입회인을 선임했을 때는 공안조사청장관에게 그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③ 변론 기일에는 입회인 및 신문, 통신 또는 방송 사업의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청할 수 있다.

④ 수명직원은 전항에 규정된 자가 변론의 청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불필요한 증거)

제16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증거라 해도 불필요한 것은 검토를 요하지 않는다. 단, 수명직원은 해당 단체의 공정과 충분한 변론의 청취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서)

제17조 ① 수명직원은 변론 기일의 경과에 대해 조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출두한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의견의 유무 및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요지를 이것에 부가 기록해야 한다.

(조서 등 등본의 교부)

제18조 수명직원은 해당 단체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는 조서 및 조사한 증거 서류의 등본 각 1통을 이에 교부해야 한다.

(처분 청구를 하지 않는 의도의 통지)

제19조 공안조사청장관은 제12조 제1항의 통지를 한 사건에 대해 제11조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당 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이것을 관

보로 공시해야만 한다.

(처분 청구의 방식)

제20조 ① 제11조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처분을 청구하는 의도 그 외에 공안심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처분청구서를 공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행하여야만 한다.

② 처분 청구서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해당 단체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제17조에 규정된 조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③ 전항의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해당 단체에 의견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처분 청구의 통지 및 의견서)

제21조 ① 공안조사청장관은 처분 청구서를 공안심사위원회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게 그 청구의 내용을 통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관보에 공시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했을 때에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간부의 주소 또는 거처를 알고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외에 처분 청구서의 등본을 송부해야만 한다.

④ 해당 단체는 제1항의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공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안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2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공안심사청장관이 제출한 처분 청구서, 증거 및 조사 그리고 해당 단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를 행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취조를 할 수 있다.

② 공안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취조를 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기재된 처분을 할 수 있다.

一.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조사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요구할 것.

二.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해 해당 물건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보관하여 둘 것.

三. 관리인나 주거지 주인 또는 이들을 대신할 만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단체의 사무소 그외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 할 것.

四. 공공기관 또는 공사(公私)의 단체에 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것.

③ 공안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전항의 처분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제2항의 처분을 행함에 있어 관계인으로부터 요구받았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명시해야 한다.

⑤ 공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건에 대해 다음의 구별에 따라 결정을 해야만 한다.

一. 처분의 청구가 부적법할 때는 이것을 각하하는 결정

二. 처분의 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는 이것을 기각하는 결정

三. 처분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각각 그 처분을 행하는 결정

⑥ 공안심사위원회는 해산 처분의 청구와 관계된 사건에 대해 제7조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해당 단체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상관없이 제5조 제1항의 처분을 행하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결정 방식)

제23조 결정은 문서로서 행하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이것에 서명날인을 해야만 한다.

(결정의 통지 및 공시)

제24조 ① 결정은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당 단체에 통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당 단체에 결정서의 등본을 송부하여 행한다.

③ 결정은 관보로 공시해야만 한다.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5조 ① 결정은 다음 각호에 기재되는 경우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된다.

一. 처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또는 각하하는 결정은 결정서의 등본이 공안조사청장관에게 송부된 때

二.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처분을 행하는 결정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로 공시되었을 때

② 전항 결정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타 소송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히 심리를 개시하고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그 재판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처분 절차에 관한 세칙)

제26조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안심사위원회에서는 절차에 관한 세칙은 공안심사위원회의 법규로 정한다.

제4장 조사

(공안 조사관의 조사권)

제27조 공안 조사관은 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관하여 제3조에 규정된 기준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제28조 ① 공안조사관은 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검찰관 또는 사법 경찰관에 대해 해당 규제와 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 또는 사법 경찰관은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항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공안 조사청과 경찰과의 정보교환)

제29조 공안 조사청과 경찰청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찰관과는 서로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교환해야만 한다.

(공안 조사관의 입회)

제30조 공안 조사관은 이 법률에 의한 규제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사법 경찰관이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으로 인해 받게되는 벌에 관하여 행하는 압수, 수색 및 검증에 입회할 수 있다.

(물건의 영치)

제31조 공안 조사관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록을 만들어 제출자에게 이것을 교부해야만 한다.

(물건의 보관)

제32조 공안 조사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영치된 물건 중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두거나 소유자나 그 외의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이것을 보관시킬 수 있다.

(물건의 환부)

제33조 ① 공안 조사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영치된 물건 중, 유치가 필요없는 물건은 제출자에게 환부해야만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와 물건을 환부할 수 없을 경우 공안 조사관은 그 뜻을 관보에 공시해야만 한다.

③ 공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전항의 기간 이내라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하며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對價)를 보관할 수 있다.

(증명서의 제시)

제34조 공안 조사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인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제5장 잡 칙

(재판의 공시)

제35조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처분을 행하는 공안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판소에서 소실되었을 때는 공안조사청장관은 그 재판을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국회에의 보고)

제36조 법무대신은 매년 1회,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국회에 이 법률에 의한 단체 규칙의 상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36조 2 공안심사위원회가 이 법률에 기초하여 행하는 처분(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하는 처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불복 주장의 제한)

제36조 3 공안심사위원회가 이 법률에 기초하여 행한 처분(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안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행한 처분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1904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시행세칙)

제37조 이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의 실시 절차 및 그 외의 집행에 대해 필요한 세칙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내란, 외환의 교사 등)

제38조 ①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 죄의 교사를 행하거나 이러한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죄의 선동을 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一 형법 제78조, 제79조 또는 제88조 죄의 교사를 행한 자
 - 二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한 문서 혹은 도면을 인쇄, 배포 또는 공공연히 게시한 자
 - 三 형법 제77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무선 통신 또는 유선 방송에 의해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신을 행한 자
- ③ 형법 제77조, 제78조 또는 제79조의 죄와 관련된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아직 폭동이 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정치 목적을 위한 방화 죄의 예비 등)

제39조 정치상의 주의 혹은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형법 제 108조, 제109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전단, 제12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99조 또는 제236조 제1항의 죄의 예비, 음모 또는 교사를 행하거나 이러한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죄의 선동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정치 목적을 위한 소요죄의 예비 등)

제40조 정치상의 주의 혹은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죄의 예비, 음모 또는 교사를 행하고 이러한 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죄의 선동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一 형법 제106조의 죄
- 二 형법 제125조의 죄

③ 검찰 또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나 이것을 보조하는 자, 법령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그리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흉기 또는 독극물을 사용, 다중공동하여 행하는 형법 제95조의 죄

(교사)

제41조 이 법률이 정하는 교사의 규정은 교사된 자가 교사와 관련된 범죄를 실행했을 때는 형법 총칙이 정하는 교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을 비교하여 중형으로 처단한다.

(단체를 위해 행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 죄)

제42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활동 제한 처분 위반 죄)

제43조 제5조 제2항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거명령 위반 죄)

제44조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조사관의 직권 남용 죄)

제45조 공안조사관이 그 직원을 남용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도록 시키거나 행할 권리를 방해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 칙

② 다음에 게재하는 정령은 폐지한다.

一 단체 등 규정령(1991년 정령 제 64호)

二 해산 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령(1990년 정령 제238호)

三 해산 단체 재산 매각이사회령(1990년 정령 제285호)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재된 정령의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④ 단체 등 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단체(해산 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령 제23조에 규정된 단체 포함)의 재산으로 이법률의 시행 전에 국고에 귀속된 것의 관리 및 처분(해산 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불을 포함) 및 이에 관한 위반 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산 단체 재산매각이사회의 사무는 법무대신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93. 11. 12 법 89)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15조 (전략)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속 및 관계 법령

과괴활동 방지법 시행규칙(1994. 7. 21 법무 81 1994. 7. 21 시행)

공안 조사청 설치법 (1994. 7. 21 법 241 1994. 7. 21 시행)

공안 심사위원회 설치법(1994. 7. 21 법 242 1994. 7. 21 시행)

전향제도: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의 사생아

- 송두율교수에 대한 '전향 강요'를 보며 -

최 정 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1. 들어가는 말

재독 철학자인 송두율교수가 자진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 한 달은 '양심적인 학자'에서 '거물 간첩'으로 추락하는 시간이었지만 본인의 혼란 못지 않게 시민단체와 학계, 심지어는 일반시민들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제 조사는 상당부분 끝났지만 사법처리의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되는 소환조사는 그러한 판단과정의 마지막 순서라고 한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송교수의 '반성'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라고 한다. 송교수는 이미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대한민국 실정법 준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 검찰이 송교수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경계인'이라는 단어와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반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검찰과 송교수 측 사이의 공방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필자에게는 사법적 과정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권한도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건이 이미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한국 사회에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송두율교수 사건이 지닌 의미와 성격을 분명히 하려면 그 사건을 개인적 수준과 사회구조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사고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그 사건은 분단체제하의 조국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한 지식인의 삶과 선택, 고통, 강박함과 낙담 등으로 점철될 것이며,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많은 부분이 이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찌보면 사소하기조차 한 인간의 개인사 및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실제로는 송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송교수의 개인적 수준의 사실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필자의 판단에 보다 중요한 것은 송교수사건이 지닌 사회구조적 수준의 문제이다. 그 자체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 실제로는 구속이라고 하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그 사건이 지닌 사회구조적 수준의 문제, 즉 분단체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 그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전문가의 판단 심지어 북한 고위당국의 내락에 의한 입국설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언어적 표현들이 '말'로 성립하는 것도 비이성적인 냉전 분단체제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러한 논쟁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말', 그리고 그 '말'이 법적 효력을 갖는 현실에 대해 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말'은 "미진한 반성"이고, 법적 효력은 "구속 수사와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언어적 표현은 과거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것들이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고, 그 결과 민주화과정에서 더 이상 그러한 관행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어졌던 '전향제도'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전향제도가 20세기의 야만적인 제도로 분단체제 및 권위주의체제와 결합을 통해 그 체제의 유지, 재생산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세기 말에 이미 생명이 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송두율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과 전향제도

송두율교수사건이 사회적 수준에서 사건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단체제와 그로 말미암은 냉전이데올로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분단체제가 형성되고 자리잡은 것은 이미 5-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더욱이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 및 강압체제와의 결합을 통해 존재해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화된 순응과 복종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분단체제 및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는 방식도 매우 적대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양자택일형인 것이 일반적이었다. 1980-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은 이러한 냉전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의 결합을 붕괴시켰지만, 분단체제가 갖는 규정력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데올로기 지형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스펙트럼의 폭이 넓고, 내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송두율교수사건은 사안 자체가 과거의 행적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문제지만 민주화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법적 판단이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조가 훨씬 복잡해진다. 먼저 송두율교수사건, 특히 검찰의 구속을 둘러싸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살펴보자. 신문기사나 논설 등을 통해 확인되는 언론사 및 각계각층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검찰 >

검찰은 송교수의 혐의 내용이 중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송교수는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94년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작금을 받고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친북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수 차례에 걸쳐 송교수에게 반성과 참회를 주문했으나 송교수가 '경계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구속수사 방침으로 결정하였으며, 기소 여부는 향후 송교수의 태도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태도이다.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송두율이 헌법상 이적단체인 북한 권력의 핵심인사이고, 30여년간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어쉴뿐 민족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였다. 또 다른 인사는 송교수사건은 분단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며 남측 일부 세력이 동조한 만큼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와 KBS방송국,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 자유총연맹 등 >

자유총연맹 등은 "송씨는 자기가 살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김일성 품을 찾아갔던 공산주의자로, 아직

도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거나 전향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친북활동을 일삼으로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쳐 온 송씨는 마땅히 의법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민변 >

민변에서는 몇 가지 증거를 대면서 송교수의 경우 구속의 법적 조건인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검찰의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신구속의 불이익 처분이며, '전향과' '자백'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학단협, 민교협 >

학단협과 민교협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송두율교수사건은 "한국사회가 분단과 냉전의 퇴영적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통합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민국의 선택을 중용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며, 검찰의 구속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 입장들은 '노동당 후보위원' 등 사실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며, 그것의 사실 여부는 이 글의 목적 밖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이들 세력들의 입장 차이와 사회세력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즉 검찰이나 한나라당, 자유총연맹 등이 이 사건을 대하는 입장은 매우 공격적이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냉전적 사고와 언어로 재단하고 있다. 반면에 민변이나 학단협, 민교협 등은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칙적인 입장 표명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회과학계에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반응 가운데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현상은 검찰이나 자유총연맹,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의 발언에서 발견되는 반성과 참회라는 단어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명확하게 표현한대로 지난 80여 년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슬하게 보아왔던 '전향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향을 유도하는 제도가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1998년 7월 그것이 준법서약서로 대체되고, 다음해인 1999년에는 준법서약서마저 무용지물이 되면서 우리는 전향과 관련된 제도가 역사적 퇴안길로 사라진 권위주의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송교수사건을 통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전향제도의 특성과 사회적 의미

전향이란 본래 방향전환의 약어로서, 특정한 가치나 신념체계를 가진 자가 이와 다른 가치나 신념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이다. 이에 비해 사상전향제도라고 할 때의 전향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상범의 사상개조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이나 지배체제에 저항했던 사람이 기존의 신념체계를 포기하고 국가의 지배적인 사상에 동조하고 국가권력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이러한 전향에는 그외에도 정세의 변화나 시대의 분위기가 바뀔 때 종래의 가치신념체계를 다른 가치신념체제로 바꾸는 것이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정신적 갈등과 고인의 결과로 정치적 신념이 변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전향은 그보다 협소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이 글에서 말하는 전향제도의 의미는 반체제운동의 지도자나 진보적인 지식인이 국가권력의 강제에 굴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전향은 타인이나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기 때문에 외부세계를 향한 태도

표명이 전제되며,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가치나 신념을 포기하거나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앞으로는 국가권력이나 지배체제에 충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

물론 전향제도의 작동방식이나 전향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만 전향으로 인정했으며,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전향이 승인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분단체제를 지탱해 온 법률과 제도들이 공격당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향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출소후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살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적어내면 그대로 전향으로 인정되는 추세로 변한다. 1998년에 전향제도의 대안으로 법무부에서 제시한 준법서약제는 사실상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실용화되었던 문서의 형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송교수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반성은 준법서약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강제력이 극대화되는 전향제도가 사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사상전향제도는 좌우익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검사나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좌익 구속자들을 전향시키는 형태로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1949년의 국가보안법 개정시 보도규조항이 삽입되고, 그에 따라 보도연맹이 조직되자 엉뚱하게 그 규정을 강제적인 사상전향의 근거조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상전향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6년에는 법무부장관령에 의해 사상전향이 공식제도로 확립되었다. 이외에는 교도소 내에서 분류처우와 관련된 규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전향제도는 부권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형사사법 관행이었던 것이다.

근대 국가가 탄생한 이래 각 국가의 독특한 조건 속에서 사상범(내지는 확산범)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즉 1940년에 제정된 미국의 파괴활동방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은 하나의 예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파괴활동방지법은 매카시즘(McCarthyism)의 선동정치 이후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더욱이 전향을 강제하는 식의 규정은 없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적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치시절이었고, 그 이후로는 유사한 법률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19세기에 사상범죄자는 반드시 배심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또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하는 등 사상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규정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23년 라드부루흐(G. Radbruch)가 한 법언 즉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오직 논쟁할 수 있을 뿐"이라는 원칙이 근대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향을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력 등을 통해 강제하기도 했다. 전향을 강제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상범죄는 기존의 국가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이념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범죄자의 사고방식, 그 자체이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강제적인 사상전향은 권력자와 지배체제를 절대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적대시하는 전체주의적 지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향제도의 역사적 형태변화

전향제도를 비롯한 사상을 통제하는 제반 제도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며, 전체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

1) 그 규정은 실제로는 좌익이 아니지만 좌익활동가와의 관계로 인해 좌익의 활동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교화를 조건으로 경미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이었다.

2) 여기서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을 통한 교화 혹은 정신개조 등과의 비교가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루겠다.

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나 형태 등은 해당 시기의 정세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적인 전향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시행된 것은 일제시대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의 보완책으로 1931년 경 사상전향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는데,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나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형태의 전제주의적 지배유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좌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전향공작이 진행되었다. 즉 당시의 일본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전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의 가족주의와 집단주의를 반영하여 순응하는 자에게는 오점을 통한 변질을, 불응하는 자에게는 사회에서의 영원한 배제를 기도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사상전향제도도 좌우익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면서 또 다시 등장하였다. 즉 한국전쟁을 계기로 사상전향공작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56년도에는 전 좌익수중에서 전향자가 62%였고, 1957년도에는 전향자가 74%에 이르고 있다는 당국의 조사결과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또한 교도소에서는 전향여부에 따른 처우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가 갖는 폭력성과 비인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유신체제가 성립한 직후였다. 그것은 한 마디로 비전향 사상범의 절멸 정책이었는데,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직후인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3년 6월 사상범이 수감되어 있는 4개 감옥(대전, 대구, 전주, 광주)에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이 만들어지고, 동년 8월 2일 법무부 예규 제108호로서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이 시달되면서 전향공작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 특징은 전향과 죽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사상범들은 "너희들에게는 전향이나 죽음이냐라는 선택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향제도가 사라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사상범들의 개별적인, 혹은 조직적인 저항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교도소에서조차 최하층의 대접을 받는 사상범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데에는 당국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둘째, 전향공작에 가해지는 국내외의 압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법학적인 비판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비판, 그리고 민주화운동 차원에서의 비판이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UN인권위 등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에서 비인도적 제도와 자회견문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전향제도를 계속 유지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사상범을 통제하는 방식이 약화되는 과정은 사회적 저항이 큰 부분부터 하나씩 바꾸거나 폐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989년 5월 29일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청주보안감호소가 청주여자교도소로 변경되었다. 대체적으로 사상범들의 징역살이도 향상되기 시작했다. 또한 비전향 사상범들중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던 몇몇 사람이 가석방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북한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그리고 말랐던 전향제도도 1998년 7월 준법서약제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수들이 출소하면서 준법서약제마저도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친 사회운동 진영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이룩한 것이 전향제도의 폐지이며,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3) 그러나 정작 오늘날의 일본에는 사상전향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대전 직후 일본을 통치했던 미군정사령부가 사상전향제도를, 일본군국주의가 만들어 낸 가장 악독한 제도라며,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범과 관련된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법들도 역시 일본군국주의의 산물이라고 폐지시켰다.

4) 인도적 차원에서의 비판은 대부분의 사상범들이 고령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비판은 전향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분단체제 및 전제주의적 지배유형을 공격하면서 전체주의적 획일화와 비민주적 질서의 상징으로 양심수 및 그들에 대한 전향제도를 비판한다.

해방 이후 전향제도의 변화를 포함한 사상범에 대한 통제정책의 강화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독재체제의 등장 등 권위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전향제도가 다시 도입된 1948년과 1949년이 분단체제의 완성과 이승만독재체제의 출발이었다면, 반공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진 1961년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해이다. 비인간적인 폭력을 통해 사상범에 대한 강제전향공작이 일어난 시기는 1973년으로 유신체제가 들어선 직후였다. 반공법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1980년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신군부의 광주학살'과 1980년의 오월민중항쟁, 그리고 그것을 딛고 성립한 제5공화국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2003년 송교수사건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일부 정치계와 언론계, 사회단체 등이 전향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전향'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반성과 참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송교수의 전향을 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향제도가 각기 당시의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권위적이고 전제주의적인 도구였다면, 오늘날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전향제도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시대착오적인 몸부림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전향제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아야만 하며, 나아가 그 모태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일 것이다.

5. 전향제도에 대한 사망선고를 위하여

사실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송교수의 행동거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즉 분단체제하에서 경계인을 자처하는 송교수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가 그로 하여금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보여주어 어렵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의 분단체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의 행위만이 부각되어 있으며, 여기에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까지 작용하면서 첨예한 논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 수준보다는 사회구조적 수준에 있다. 송교수사건을 통해 다시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장치들이 진정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야말로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전향제도와 같이 사상을 통제하는 제도는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의 사생아로, 20세기의 야만적인 유물일 뿐인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한 명의 '경계인'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체제라면 그 유연성과 포용성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반성을 아니할 수 없다. 또 한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여 특정 사실의 전후 맥락도 모르는채 다수의 힘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성숙되고, 열린 사회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과 창의력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는 그와 같은 권위적인 통제나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매도가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회의 구성을 지체시키고 방해할 뿐이다. 이제는 그 '경계인'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탈냉전-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은 분단의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항도 있지만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반도는 탈냉전-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분단시대의 과거 행위를 대상으로, 그것도 피해자도 없는 이타적

인 행위를 대상으로 분단시대에 어울리는 법과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몸부림이든지, 과거의 권위주의시대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탈냉전 평화통일 시대를 위해 보다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분단체제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수구언론의 마녀사냥

- 송두율교수 관련 신문보도 분석

김은주(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장)

37년만에 독일에서 귀국한 송두율교수가 '해방 이래 최대의 거물간첩'으로 불리며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외 민주화인사이며 저명한 학자라는 일방의 주장과 친북인사이며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또 다른 주장이 맞서오던 상황에서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를 영어의 몸으로 만든 근거인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는 김일성주석의 장례식 서열 23위로 김철수가 등재된 노동신문의 보도이외에 별다른 활동의 근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죄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국정원과 검찰 한나라당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기정사실하거나 추측보도를 남발하며 송교수를 후보위원으로 단정지었다. 또 송교수를 추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가하면 전향을 해야 선치가 가능하다는 등 처리방향까지 제시하며 준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이들 언론은 '정부 내 북한 핵심세력 존재', '기획 입국', '정연주 사장의 간첩 연루 의혹' 등 증거도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그대로 받아쓰며 전방위적 색깔공세를 펼쳤다.

송교수를 둘러싼 논란의 기본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오래 전부터 진보진영에서 개폐를 요구해오던 국보법이 송교수 사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은 매우 수세적이었다. 송교수가 과거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후보위원급의 대접을 받았음을 인지했다는 사실 등이 조사과정에서 알려지게 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충격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과거행적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말이 바뀐 것처럼 보였던 송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보안법에 대해 진취적 입장을 보여왔던 언론조차 수구언론과 정치권에 눌러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 글에서는 송교수의 입국이 가시화되던 때부터 송교수의 구속과 전향논란에 이르기까지 추측보도와 부풀리기 무책임한 받아쓰기와 마녀사냥식 보도를 일삼았던 수구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도의 기본원칙과 사법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오만한 언론권력의 실태를 고발하고자한다.

1. 국정원 발표이전까지

송교수를 김철수로 단정, 기소 주장한 조선

이 기간동안 가장 앞장서서 송교수의 '친북'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조선일보이다. 조선은 송교수의 초청이 확실히 보도되던 9월 18일자 1면에 <친북 송두율 교수 22일 귀국추진 국정원 "입

1)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점과 북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국면 이적성 수사>라는 제목을 달아 '친북'을 강조했으며 같은 날 사설<해외 인사 입국, 법질서 존중돼야>에서도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송 교수는 차체에 당국의 조사를 자청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송교수에게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23일자엔 <송교수는 국정원이 확인한 간첩 민주 인사로 둔갑시킨 속셈인가>로 정형근의원의 주장을 크게 다뤄주었고 24일자엔 <북노동당 김철수여부 집중추궁/최병렬대표 "기소유예해선 안돼">라는 기사를 실는 등 한나라당의 주장을 연일 비중있게 보도했다. 당시 송교수에 대한 평가와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중앙과 동아조차도 공소보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아래표 참조) 그러나 조선은 국정원 조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김철수와 동일인임을 강조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며 기소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몰고갔다. 9월 25일자에 <검찰 "김철수와 동일인 증거있다">, 26일자 1면에 <국정원 '송교수 기소' 의견/수사팀 "송교수를 김철수로 보고 있다">와 5면에 <송두울교수 기소 '가닥'/보안법 위반 상당부분 확인 '전향적 처리'분위기서 급변>을 실었고 27일자 5면에는 <검찰 '송두울 기소'법률검토>등을 실은 검찰의 강경 주장을 대변했다.

동아	25일자 4면<송두울씨 민주인사나 친북인사나?> 26일자 30면 <국정원, 송두울교수 기소 요청할 듯> 27일자 30면 <국정원 "송두울교수 오늘 재소환"> "사법처리해야하나" 검찰고민>
중앙	25일자 2면 <송두울교수 출국정지> "송교수 독 국적이라도 국가보안법 적용가능"> 26일자 1면 <송두울씨 검찰서 곧 조사>3면<송두울 처리 미묘한 견해차> 27일자 2면 <송교수, 김철수 이름 사용> 5면<한나라 초청경위가 뭐냐> "관문통과 너무 힘들어">
조선	25일자 4면 <검찰 "김철수와 동일인 증거있다"> 26일자 1면 <국정원 '송교수 기소' 의견/수사팀 "송교수를 김철수로 보고 있다"> 5면<송두울교수 기소 '가닥'/보안법 위반 상당부분 확인 '전향적 처리'분위기서 급변> 27일자 5면 <검찰 '송두울 기소'법률검토>

<9월말 조중동의 송교수 관련 보도>

물론 국정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단해 공소보류나 기소나 하는 추측보도를 하는 언론모두가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송두울=김철수'로 단정지며 기소로 방향을 잡아 강경대응을 유도했던 조선의 태도는 의제를 선점해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차분한 태도를 보였던 동아

중앙일보의 경우 이 시기동안 기사량 자체가 매우 적었고 팩트위주의 보도를 했다. 주목할 것은 동아일보이다. 동아일보는 송교수가 입국하기 전인 9월20일자 사설에서 송교수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정부에 대해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다"며 "어렵게 성사된 해외인사 고국방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려깊은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동아는 국정원의 발표직전인 10월1일자 2에서도 선처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2) "송 교수가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당 가입 사실 등 자신의 친북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의 '준법서약서'와 '반성문'을 국정원에 제출, 선처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노동당 입당 및 방북 활동 등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공소보류' 처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원도 이 사건을 '공소보류'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조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동아는 송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도 중앙·조선과 달리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원의 발표내용이 보도된 10월2일자에 '북 거물공작원 송두울'이라는 문패를 달고 발표내용을 대서특필하면서도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에 지지와 비판 글을 같이 실어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추려 했다.

동아의 이러한 태도는 2000년 7월의 입국시도 실패에 대해 "송두울 교수의 귀국이 번번이 좌절된 주된 원인은 국정원의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 때문이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이같은 요청이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³⁾는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동아의 태도도 국정원 발표가 있는 후에는 180도 달라진다.

2 국정원의 발표이후 보도

1) 국정원 발표관련 보도

10월 1일, 국정원에 대한 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송두울교수의 조사결과가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의해 언론에 알려졌다.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직접 통보받아 알고 있었으며 15만달러의 돈을 받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충성맹세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과 동아 등 수구언론들은 10월2일자에 4~5개 지면을 털어 송교수를 거물간첩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에 비뻤다. 이들 언론은 인용부호없이 '북 거물공작원(동아)' '북 정치국 후보위원(조선)' 등의 단정적인 문패를 달고 <공작원 교육받고 30년 비밀활동> "김일성 사망때 김정일 손잡고 통곡" <벗겨지는 실체> <거짓말 30년> 국정원의 일방적인 발표를 매우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사실역시 "그동안 보여온 송씨의 태도 역시 공작원이나 걸맞은 것이어서 더욱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송두울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조선)"고 실는 등 송교수에 대한 이념적 감정적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의 경우 문패를 달지 않았고 기사량도 조선동아보다는 적었으나 <"김일성 조문 당시 김정일 손잡고 통곡"/충성서약문 작성 등 사실상 간첩활동>이라고 하여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송교수를 '공작원' 간첩'으로 단정했던 언론의 보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조사로 뒤집히게 된다. 검찰은 22일 송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단계에서 송씨를 북한공작원 또는 간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4조에 따라 기밀탐지나 시설과괴, 지하당 조직 등의 임무를 수행해 그 결과를 북한에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검증없이 쓰고보자는 식의 보도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를 뒤집는 결과가 국가공식기관에 의해 나왔어도 언론은 이에 대한 반응은커녕 다시금 검찰의 주장을 확인없이 쓰는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다.

현재의 핵심쟁점은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그가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측은 이를 부인했고 송교수가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송교수 측의 반론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조선의 경우 2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론을 아예 다루지 않아 편파보도의 극치를 보였다.

수구언론들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중앙 3일자 5면> <송두울씨 가면 더 이상 안된다 동아 사설>등의 기사를 통해 2일 있었던 송교수의 기자회견내용을 비난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후 몇차례 있었던 송교수의 사과

3) 2000년 7월5일자 <뺨 송두울교수 왜 못오나?/국정원 준법서약서가 발목>

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색깔론에는 강한 비판. 국보법 문제제기는 소극적인 경향과 한겨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경우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보도한 2일자에 따로 문패를 달지 않은 채 2개면 정도로 발표 내용을 보도하면서 송교수측의 반론을 충실히 실어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향은 <정치권 신 매카시즘 우려 목소리 10/3> 송두울사건 정치권 일부 색깔론 제기 '체제논쟁' 비화우려 10/4 > 등을 필두로 색깔론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우려를 나타냈으며 2일의 송교수 기자회견보도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색깔론에 대해서는 10월4일자 1면머리로 <무차별 색깔공세 우려>를 달고 사실역시 <송두울 사건 이념공세 지나치다>로 색깔공세에 대한 적극적 비판입장을 보였다. 이후에도 한겨레는 <소모적인 송두울 색깔공세 10/8> <조선동아의 한국방송 '색깔공세' 10/11> 등의 사실과 <송교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라는 매체비평 글을 실는 등 이념공세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송교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의 처지와 선택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선처를 바라거나 전향제도의 비민주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은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는 10월1일자 사실<송교수가 진솔하게 설명하길>이라는 사실에서 송교수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한 것은 10월 20일자의 홍세화칼럼 <송두울과 국가보안법> 뿐이어서, 기존의 보안법 개폐주장을 하던 것과 달리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송교수가 진솔하게 설명하길 - 10월1일자 한겨레사설

우리는 송두울 교수의 노동당 입당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실정법 위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떠나 송교수는 이번 일로 양심적 학자로 알려진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땅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꽃피고 성숙한 남북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적극 감싸왔던 많은 인사들이 도맷금으로 공격 받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송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해 비판을 받을 것은 받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본다.

2) 준사법기관을 자임하는 수구언론

송교수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한 언론은 사법처리의 수위를 언급하면서 추방을 요구하는 가하면 전향을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면서 판관의 역할까지 하려들었다.

송교수가 처벌을 받을 지언정 추방만은 말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수구언론들은 국내에 있으면 시끄러우니 아예 추방해 버리자고 주장하고 나선다. 그 선두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4일자 <송두울씨 한국에 있게 할 필요 있나>란 사설을 통해 "그의 태도로 보아 추방도 유력한 선택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두울씨 한국에 있게 할 필요 있나 - 10/4 조선 사설

사법처리 방향은 검찰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의 태도와 의도로 미루어 그를 재판에 넘겨 본들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재판과정과 그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설사 그가 실행판결을 받아도 얼마 후면 풀려나 그때부터는 마음놓고 활동하면서 특정 이념세력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게 뻔하다.

이런 그에게는 사법 처리보다도 그가 국적을 갖고 있는 독일로 추방하는 것이 더 적절한 현실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태도에서 인간적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일반국민의 정서도 "내보내라" 쪽인 듯하다. 어떤 이유로든 그에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6일(월)자 1면에 일제히 <송두울씨 국외추방 검토>기사가 실리면서 <"이념갈등 장기화 막자" 교육책 동아> 송씨 추방이나 기소나 중앙>는 기사가 짝을 이룬다. 7일자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추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추방'이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피의자에 대해 처리여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언론의 태도는 놀라울 따름이다.

'전향해야 선처' 주장 - 폐지된 법안들고 목 조르기하는 언론

10월14일, 송교수는 노동당탈당과 독일국적포기를 공개선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을 했다. 몇차례에 걸친 사과가 이어졌고 헌법준수 의사를 밝혔으나 수구언론은 '전향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송교수를 비난했다. 전향하지 않으면 선처하지 않겠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되풀이 받아온 언론은 아예 적극적으로 전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중앙은 10월14일자 8면 <송두울씨 "전향안해">를 시작으로 15일자 <검찰 '송씨 전향인정 고심'>이라는 기사에서

"송씨 측은 '전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활동을 부인해 온 터에 이제와서 화끈한 전향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후보위원이었음을 자인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따라서 웬만해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정쩡하고 감질나는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씩 반성의 강도를 조절할 뿐 아직 '무조건 항복'은 할 수 없다는 투로 들린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사실<송두울씨 전향의사 없나>에서도 "헌법준수의사는 준법서약을 받아들인 셈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전향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전향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중앙은 또 "친북성향 정도를 넘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 대우를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또 어떤 경제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독일 국적포기를 포함한 그의 행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가장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조선일보이다. 송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내부의 논의를 전하는 10월 6일자 기사의 제목을 <송씨, 선처조건인 전향의사 안밝혀>로 달아 가장 먼저 '전향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던 조선은 이후에도 사실과 칼럼을 통해 전향을 강요했다. 특히 조선은 송교수가 노동당 탈당과 독일국적을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유일하게 1면에 <송두울씨, 전향은 언급안해>를 굵은 글씨로 처리하는가하면 <검찰 '송씨 전향의사 미흡' 판단> 등의 기사를 실어 전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이를 '친북행적'에 대한 반성 회피로 몰고 갔다.

전향이 그렇게 두려운가 10/14 태평로 조선

"여기에는 대부분의 전향이 생존을 위협하는 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지조를 중시하는 우리의 선비적 전통이 배어 있을 것이다. 송씨 역시 전향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함'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면서 이 말에 자기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도 '자기성찰에 의한 자발적 전향'과 '권력에 의한 강제적 전향'을 구분해 지식인의 전향 문제를 윤리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송두울 반성' 사정할 일 아니다 - 10/21 조선 사설

검찰이 송두울씨에게 전향을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언짢게 만드는 행태다.

송씨가 자신의 친북활동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성찰의 삶을 살든 아니면 여전히 모호한 경계인 논리로 자신의 기존영역을 고수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선택일 뿐이다.

검찰은 송씨의 선택을 참조해 그에 대한 사법처리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만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전향문제에 대해서는 세 신문 중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동아 역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구속수사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전향'을 강요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송두울씨 문제 사법판단 지켜볼 때 10/24 동아 사설

그동안 노동당 후보위원임을 인정하지도, 누우치지도 않은 송씨는 우리 사회가 베풀 수 있는 관용에 필요한 '조건' 갖추기조차 거부했다. 검찰이 송씨에게 전향서를 내달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송씨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누우치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

검찰과 언론이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향 제도는 지난 98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인권적 제도라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다. 전향제를 대신해 만들어진 준법서약제도 역시 지난 7월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며 법무부에서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앙일보 등은 <준법서약제 폐지 잘했다>는 사실까지 신고 "시대의 흐름으로도 이제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속박해서는 안된다"고 환영한 바 있다. 동아 역시 올 4월4일자 <보안법 대체 전제조건있다>는 사실에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개폐할 것을 권고하고 일부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10년 넘게 고쳐지지 않았으며 일부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향을 강요하며 한 인간의 생각을 조사하는 것은 한 인간의 기본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폭력'이다. 이미 폐지된 법률 전가의 보도처럼 흔드는 수구언론의 시대착오적 태도에 아연할 뿐이다.

3) 무책임한 언론의 받아쓰기

국정원과 검찰의 발표 및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은 국정원 발표 이후 더욱 맹위를 떨친다. 중앙일보의 10월6일자 <공작원 녹취들자 송씨 자백>이라는 기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출처로 한편의 시나리오를 썼으나 '녹취들자 송씨 자백'이라는 내용은 기사에도 없는 내용으로 중앙은 결국 21일자에 사실과 다르다는 송교수측의 반론보도문을 실어야 했다.

이후에도 <송두울씨, 97년 황장형씨 망명하자 북공작원에 "내 신분 숨겨라"/베를린 북대표부에 부탁. 공안당국 확인> <최경철청장 "송씨 간첩혐의 농후"> <송씨 북여권으로 입북 포착> <송씨 94년 방북때 북여권 사용의혹/ 검찰> <김일성 장례식에 김철수 자격으로 참석> <송씨, 김정일 친필지령도 받아> <정형근의원 "북공작원이 진술" 주장> <송두울씨 입국배후 본격 수사> 등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지면을 메운다.

현재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는 김일성주석 사망시 김철수란 인물이 장의위원 23위로

4) 10월29일자 기자협회보

노동신문에 발표되었다는 것 뿐이다. 국정원이나 검찰수사 결과의 파장과 별개로 새롭게 입증된 사실은 별로 없다. 송교수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그가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수구언론은 기사의 편집이나 제목을 매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추측보도를 남발했다. 국정원의 발표이전에 동아와 중앙의 지면에는 국정원이 정치국후보위원임을 확정하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언론은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였고 검찰조사에서 뒤집힌 부분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검찰발표를 기정사실화하며 지면을 메우고 있다.

송교수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국정원의 조서를 가지고 정치권 일부에서 언론에 흘려 일종의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아무리 피고인이 중한 범죄를 지었더라도 근대 민주사법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론의 보도를 비판했다.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사법제도의 기본을 수구언론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송교수가 했던 처신의 어느 부분이 실정법에 저촉되는가를 따져보고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실제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부풀려 보도하며 수사와 재판이 역할까지 자처하며 마녀사냥을 벌였다.

3. 각종 왜곡보도

1) 기획입국설과 색깔론

수구언론은 '송교수 죽이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해 전방위적인 이념공세를 펴내기 시작했다. 10월1일자에 한나라당 이원창의원의 '정연주KBS사장 간첩연루의혹' 관련 보도가 실린 것을 시작으로 수구언론과 한나라당 합작의 사상검증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송씨의 대남 선전선동술에 동조하는 진보적 성향의 소장과학자 일부가 현정권의 핵심에 포진해 있다는 정형근,홍준표의원의 발언, '색깔이니 이념이니 말하는 사람자체가 (이사건과)관련됐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최병렬대표의 발언 등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념공세가 수구언론의 지면에 여과없이 보도된다.

수구언론은 한나라당의원이 터트리면 이를 그대로 받아주며 사실이나 칼럼을 통해 의혹을 부풀려가는 식의 보도로 색깔논쟁을 재생산해냈다. 이들이 들이댄 색깔론 돋보기는 이종석 NSC위원, 고영구국정원장, 서동만 국정원기조실장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정연주KBS사장 등 개혁적 인물들을 투사하며 기획입국설과 간첩연루설로 모아졌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10월3일자에 송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송에도 참여 중"이라며 "盧대통령 사람들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하필 송씨의 변론을 맡았다는 점에서 억측도 없지 않다"고 보도, 변호인에게까지 색깔론 돋보기를 들이대는 과감함을 보였다.

또한 중앙은 10월4일자 1면머리를 <송씨 국내 연계세력 수사/검찰 학계·언론계 등 6-7명 확인>이라고 달고 하단에 <北 연계세력 정부 핵심에 있다> 정형근 의원주장>으로 달아 무책임한 색깔공세를 검증없이 받아냈다. 이들 기사는 그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사없이 단독기사로 다루어졌는데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중앙의 1면기사는 검찰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날 <송두울 사건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라는 사실에서 중앙은 "송씨에 대한 혐의는 검찰조사에서 엄정히 밝혀지겠지만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정부가 송씨의 귀국에 어떻게 개입했느냐로 쏠

리고 있다"며 기획입국설을 강력히 제기했다.

“송씨 국내 연계세력 수사”/검찰 학계·언론계 등 6-7명 확인 - 중앙 10/4 1면 머리
“검찰은 특히 송씨와 연계해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인사 6-7명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수사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연계세력’이란 송씨를 먼저 조사한 국가정보원이 지난 1일 송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에 관한 수사자료도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학계·언론계등에 종사하면서 남한에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일을 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공안당국의 한관계자는 “이런 국내인사들과 송씨의 교류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기간 진행됐다”며 “송씨의 입국을 계기로 그들의 범법사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역시 10월3일자 4면머리로 <송두울씨 감싸는 세력 누굴까> 4일자 4면 <송두울 입국 ‘보이지 않는 손’ 작용했다> KBS이사장 ‘송씨 입국’ 발 벗고 나섰다> 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3일자 <송두울과 문 배후는 뭔가> 라는 사설의 경우 “국정원의 송씨 처리는 결과적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배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고 주장,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공격적인 것은 역시 조선일보이다. 조선은 10월2일자 사설 <송두울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에서 “송씨 처리문제는 자칫 현정부의 이념 성향까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념문제를 제기했다. 2일자에 동아와 중앙이 송교수나 그를 옹호했던 시민단체 등을 비판하는 것에 그친 반면 조선은 정부의 색깔론을 제기하는 선도성을 보인 것이다. 10월3일자에는 1면머리로 <송두울씨 입국 1주일전 국정원2차장 배를린 갔다>를 실어 2차장이 송씨의 입국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간 것처럼 기획입국설 분위기를 조성했고 <송두울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극한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4일자에서 <“정부핵심에 북 연계세력있다” 정형근 의원> “최고 위기관서 송씨 입국 개입”>을 실었던 조선은 7일자 4면에서는 <“북은 북입장서 이해해야 한다는 송씨 내재적 접근론” 안티조선운동, 한총련에 영향/심규철 의원, 국감서 주장 검찰총장 “상당한 영향”>이라는 기사를 실어 안티조선운동까지 친북으로 몰아세우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들 언론은 민주화사업회가 청와대에 입국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획입국으로 몰고가는 가하면 캐나다 노사모가 송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며 ‘노사모’를 빌미로 청와대와 송교수의 코드를 맞추려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2) KBS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하는 조선과 동아

이 사건 이전부터 수구언론의 KBS에 대한 반감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이 평가였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조선과 동아는 KBS의 프로그램을 변질시키고 정사장을 좌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이념공세를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역시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10월 1일 특집으로 편성된 미디어 면을 통해 KBS가 지난 5월에 방송한 <일요스페셜-경계도시>와 9월에 방송한 <한국사회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편이 송두울 교수를 ‘영웅화’한 ‘편파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사설 <KBS와 송두울>에서 조선은 KBS를 비난하면서 국민과 국회가 이를 제어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부추긴다.

KBS와 송두울 -10/1 조선사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국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가 송씨에 대한 ‘영웅화’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다... 현 정권의 등장과 정연주 사장 부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KBS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국기(國旗)

를 위태롭게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국민과 국회도 KBS의 편향적인 제작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인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KBS를 비판하며 조선 따라가기를 했다. 1일자에 사설을 실지 않았던 동아는 2일자에 <이념편향 KBS 공영방송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공공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한쪽만 개혁적으로 부각시키고 다른 한쪽은 개혁대상으로 몰아세우는 ‘의식화 방송’은 통합이 아닌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10월 7일자에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에”이라는 오락프로에 등장한 ‘김일성 시계’를 두고 ‘친북’ 운운해 시민사회의 비난을 샀다.

이후 두 신문은 서로 뒤질세라 <KBS는 이제 뭐라 할 것인가> <이념편향 KBS 공영방송 맞나> <정연주 사장 스스로 사퇴를> 등의 사설과 칼럼을 통해 KBS가 송두울 교수를 미화하는 데 앞장섰고 정사장은 간첩의혹이 있다면서 집요한 흔들기를 시도한다. <KBS정연주사장 간첩사건 연루 논란/“간첩 비밀쪽지에 ‘안기부 내사중 적혀’> <“코드 방송 이젠 지겹다”/KBS계사편에 시청자비난 빗발>를 비롯해 <“KBS, 1월부터 지속적 접촉 송씨 귀국조율 큰 역할 했다”/신영균의원 “미화 프로그램 각본따라 준비” 주장> <“송씨 ‘미화’ KBS정사장 역할 밝혀야”> <“KBS가 송씨 영웅만 들기 나서”> <송검찰총장 “추방 염두에 둔 적없어”..KBS도 수사용의> <“KBS, 한국방송 맞아”> <정연주 사장 스스로 사퇴를> 등의 무책임한 폭로나 정치공세성 발언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KBS를 공격했다. 중앙도 <20년전 뉴스>를 보고 싶은 까닭 <KBS균형감각 갖춰라> 등의 기사를 실기는 했지만 기사량이나 시각에서 조선동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며칠동안 조선동아의 지면을 차지했던 정사장의 간첩연루의혹은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창의원이 지목했던 관련자들이 정사장의 관련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KBS가 송교수 미화에 앞장 선 근거로 들고 있는 「한국사회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과 「일요스페셜-송두울의 경계도시」 역시 이들 신문에 의해 확대왜곡된 것이다.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경우 송교수는 해외민주인사들의 한사람으로 다루어졌을 뿐, 미화와는 거리가 멀다. 「일요스페셜」의 경우도 KBS가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경계도시」라는 영화를 방송용으로 편집해 방송한 것이었지만 조선과 동아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송교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KBS에서만 방송된 것이 아니다. MBC 역시 「시사매거진 2580」 등을 비롯한 여타 프로그램에서 송교수를 우호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독 KBS만을 문제삼는 것은 조선과 동아의 비판이 정사장 흔들기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사실왜곡 보도

① 송교수의 학술단체 지원 관련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및 해외학자 통일회의를 이끌었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검찰의 발표에서 다시 반복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0월3일자 한겨레는 <“남북학술회의 정치학회 주관 송두울 교수는 다리구실만”>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대회를 주관했던 정치학회 길승홍교수와 한국통일학술포럼대표 백영철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학술대회는 대우그룹에서 1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이는 95년 당시 이 대회를 주관했던 한국일보의 보도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95년 8월1일자에 대회를 개최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논란이 일자 올 10월3일자에 길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북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해명하고 있다.

“남북학술회의 정치학회 주관 송두율교수는 다리구실만” - 한겨레 10월3일자

길승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95년 제1회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내가 주관했다”며 “94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에 갔다가 송 교수가 북한 쪽과 연락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송 교수에게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북한 노동당이나 김용순 비서 등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학문 교류 차원에서 열린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당시 <한국일보> 편집국장이던 이아무개씨를 찾아가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후원을 받았다”며 “한국일보사가 대우그룹에서 지원받은 돈 가운데 1억원 정도를 후원했고, 관련 보도도 나갔다”고 말해 북한 지원설을 부인했다. 백영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통일학술포럼 대표)도 “통일학술회의는 한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중앙일보> 등 언론사와 에스케이·삼성·엘지·대우 등 한국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이뤄진 순수한 학술회의”라며 “북한 쪽에서는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통일학술회의가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이용됐다는 주장은 이념을 넘어 남북간 학술교류에 상당한 업적을 쌓은 남북문제 전문가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송 교수는 남북한 학자들 사이에 회의 주제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조정자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분단사상 첫 남북 심포지엄/심포지엄 성사까지 막전 막후 -한국일보 95년 8월1일자

길승흠 서울대교수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는 92년부터 「남북한 정치학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북측에 대한 중재인을 모색했다. 남측의 이같은 뜻은 평양을 방문하는 제3국의 한 학자를 통해 북측에 전달됐다. 이같은 노력 끝에 93년 중국 지린(길림)에서 남북학자가 자리를 함께하는 동북아정치학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은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통고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로 성사가 어려워 보이던 회의는 길교수와 독일 훔볼트대 송두율 교수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김일성주석 사망직후인 94년8월 세계정치학회(IPSA)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한 길교수 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김일성주석 사망직후인 94년8월 세계정치학회(IPSA)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한 길교수는 남북이 어떤 형태로든 자주 접촉하는게 남북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송교수는 같은해 9월 북측에 이같은 제의를 전달했고 2개월 뒤인 11월 처음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후 남북학자들이 직접 대화하는 준비모임을 마련하기 위해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95년 남북학자회의 내가 제안 /길승흠 前서울대교수 “北지령따른 宋씨 주도” 국정원 발표에 정면반박 -한국일보 10월3일자 7면

길승흠(전 국회의원)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일 “1995년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남북-해외학자 학술회의는 내가 송두율씨에게 제안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송 씨가 북한의 김용순 당비서 등의 지령으로 남북학술회의를 주도했다는 국정원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길 전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학술회의를 추진하면서 안기부와 사전협의하고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를 이제 와서 북한의 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길 전 교수는 “94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남북 정치학자간의 공동행사를 추진하다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학회에서 송씨를 만났다”면서 “송씨는 나의 구상을 듣고 ‘내가 도울 수 있겠다’며 북측 학자들의 참가를 주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술회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인 이흥구 당시 총리, 김기섭 당시 안기부 기초실장과 상의했다”면서 “김 실장이 지원을 약속해 여러가지 면에서 안기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길 전 교수는 “베이징 캠프스키 호텔 등에서 진행된 행사비용은 모두 대우재단 등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우리측이 부담했다”면서 “북측은 사회과학원의 연구원 등이 참가했지만 베이징까지의 교통비 외에 다른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는 한국일보 주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및 북한 학회 공동주최로 95년 7월30~8월1일과 96년 6월30~7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후 97년부터 중앙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유사한 회의를 각각 베이징과 평양에서 주관했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안기부의 협조 하에 재벌기업의 협찬을 받아 진행된 행사가 북의 통일전선사업에 이용된 것이라는 것은 세살배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만약 국정원의 주장대로 통일전선사업에 이용당한 것이라면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이를 후원한 재벌기업이 먼저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잠깐의 확인만 거치면 되는 내용임에도 조선중앙동의를 물론 경향조차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추구해야 할 언론의 책임을 유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② 도덕성 흠집내기 - 교수자격 시비와 하버마스 인용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국회정무위원회들의 말을 인용한 <국정원 보고로 드러난 혐의>라는 기사에서 송교수가 엄밀한 의미로 대학교수가 아니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부인이 사서로 생계를 꾸렸다고 했는데 사실상 송씨 직업이 북한공작원이고 공작금으로 생계를 꾸린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국정원측은 대체로 공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은 같은 날 <태평로어느 좌파지식인의 배신>에서도 그에게 ‘교수’ 대신 ‘선배’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 중 하나로 “독일 뮌스터대학 ‘임시교수’라면 1년짜리 시간강사로 불리는 우리의 ‘겸임교수’에 가깝다”는 내용을 실는가하면 6일자 시론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 마치 그가 시간강사에 불과함에도 정식교수로 가장한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은 송교수의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는 집요함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송교수를 ‘엄연한 교수’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동아의 경우 9월 27일자에 이어 10월2일자에도 “특임교수는 계약직 교수이며, 비정규직이지만 신분상 강사와는 다른 엄연한 교수. 이 명단에도 송박사에 대해서는 강사(PD)와 달리 교수(Prof.)로 표시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이 21일자에 보도한 하버마스의 인터뷰 역시 편집상의 왜곡을 찾을 수 있다. <송두율씨 스승 하버마스 교수 인터뷰 “송씨 구명 나설 용의 없어”>라는 제목아래 ““십수년간 몇 번 만나 노동당 가입은 뜻밖””이라는 중간제목을 달아 스승인 하버마스가 그와 별로 가깝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도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은 사뭇 다르다. 송교수는 귀국전날 하버마스와 통화했으며 그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국에 가는 것을 말렸고’ 최근 송교수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상황을 전해들었다. 또 ‘주한독일대사와 연락했으며 대사역시 이사건을 우려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하버마스는 또 ‘그에게 지워진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는 말과 함께 변호인의 입회가 허락되지 않고 13시간 심문을 받는 상황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까지 하고 있다. 송씨를 위해 구명운동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걸 계획은 전혀 없다.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뒤에 대사관의 역할을 언급하긴 했지만 검찰조사중이라 상황을 지켜본다는 말을 한 것임에도 거두절미한 것이다. 중앙의 이런 보도는 하버마스와의 관계를 축소해 송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폄하하고 그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송교수를 둘러싼 논란의 초기 수구언론들은 뮌스터대 교수들의 구명운동이 없다거나 독일의 태도가 방관적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송교수의 위상을 깎아내리려 했다. 당시 언론들은 독일이 방학과 휴가기간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구명운동이 없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작 뮌스터대 사회학과 교수들이 송교수에 대해 신뢰를 표명하고 배려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독일대사에게 보낸 것이나 주한독일대사가 법무장관 면담을 요청

한 사실 독일의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송교수에 대한 독일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 사실들은 축소되거나 아예 외면됐다.

③ 방송위원회의 심의결과 확대왜곡

KBS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일삼던 수구언론은 이에 대한 방송위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왜곡을 서슴치 않았다. 방송위원회는 24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한 심의결과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65조에 따른 "권고"를 공문으로 시행(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중동은 16일자에서 일제히 <"KBS 송두울 다큐 시청자 혼란케 해">라는 제목아래 방송위의 권고조치를 보도했다. 그러나 '권고' 조치는 현재 방송과 관련한 제재 조치인 주의경고(방송심의에관한 규정)와 사과,정정,관계자 징계(방송법상 법정제재) 등에 해당되지 않아 방송위가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사실상 '제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신문은 이런 내용은 꼭 뻔 채 "일반적인 제재조치로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만을 보도해 마치 권고가 더 강력한 제재인 것처럼 오해를 유도했다.

조선과 동아는 23일자에도 경고조치를 받은 KBS의 라디오프로그램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한 권고를 묶어 KBS의 편파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몰아갔다. 문제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의 주장을 방송한 부분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에 관한 규정 11조를 위반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상의 정식 제재로서 타방송사 역시 이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러나 조선과 동아는 관련기사를 보도하면서 "송두울(宋斗律)씨 미화 논란으로 KBS 1TV '한국사회를 말한다'가 방송위원회에 의해 '권고' 조치를 받은 데 이어, 21일 방송된 KBS 1라디오의 '시사플러스'(진행자 송지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권고조치와 경고를 동일한 '제재'로 몰아가며 마치 KBS의 편파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처럼 과장했다.

④ 이창동장관의 발언 확대왜곡

동아는 10월9일자 가판에 <이창동문화, "송씨사건 왜 논란되는 지 모르겠다">는 제목아래 "왜 이렇게 방송과 신문에서 머릿기사로 다룰 만큼 크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독일에서는 송씨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이창동장관의 발언내용을 실었다. 기사만 보면 송교수가 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양 보인다. 동아가 가판에 보도이후 조선과 중앙, 세계 등이 배달판에서 이를 받아 보도했고 이후 이창동장관의 발언은 송씨를 두둔한 것으로 낙인찍혔다. 한겨레와 경향은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한나라당의 공세내용은 물론 <이창동장관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실는 등 이창동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문화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간인 문화일보 9일자에 "마침 이 장관의 바로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탓에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던 기자가 취재수첩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추문화의 '宋교수발언' 파장 - 문화 10월 9일자 취재수첩

그의 말을 옮겨보자.

5) 연합뉴스 10월 15일자 기사

"신문과 방송이 일주일 이상 송씨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과연 연일 머릿기사로 올릴만한 일인지 모르겠다. 기사가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은 헛갈려하고 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보면 제대로 보인다."

이 장관은 '거리를 두고 본다'는 표현에 대해 "송씨같은 사람은 독일에 가면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분단과 군부독재의 시대를 살면서 만들어진 불가피한 상처라는 요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말이다.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대로 이 장관이 "송씨를 감쌌다"라거나 "논란거리가 안된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되게 '해석'된 측면이 있다.

송교수 관련보도는 같은 신문에서조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보도가 나오는 형편으로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언론사의 무리한 추측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장관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스러우니만큼 지켜보자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때문에 동아를 제외하고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가 가판에서 이를 다룬 후 배달판에 추가한 신문이 늘면서 파장은 급속도로 커진다. 심지어는 타 언론보도의 문제를 지적했던 문화일보조차 사실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의 적법수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탓하는 것"이라며 비난대열에 합세했다. 기자와 논설위원이 정반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기사를 확대재생산하는 '떼거리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조선은 9일자 4면머리로 이 기사를 실은 뒤 <"언론이 톱으로 다루는 건 옳바르지 않다">는 중간제목 아래 <북방송 "남조선 방문동포 북과 연결시키 말라">는 제목을 달아 이장관과 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편집효과를 노렸다. 북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이장관 관련기사의 뒤에 실으면서 제목편집을 같이 한 것.

결론

중앙일보는 KBS에 대한 조선과 동아의 비판에 대해 KBSPD협회에서 취재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을 통해 "자사 이기주의에 맞춰 행사된 알권리는 진정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할 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돼 결국 우리모두의 심장을 찌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알권리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말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수구언론이다. 이들은 자사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취사선택해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는 보도의 원칙도 팽개친 채 확대과장보도와 다음표 저널리즘을 이념공세와 버무려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구시대적 색깔론에 의한 마녀사냥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원칙마저도 훼손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안보상업주의를 앞세운 조선의 의제선점력 혹은 여론주도력의 위력은 안티조선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번 보도만 놓고 보면 당사자의 반론을 제대로 다루주어야 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보도해서 안된다는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은 수구언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재단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수구언론의 여론몰이에 진보적 매체는 물론이요 진보운동진영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송교수의 처신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우리사회의 냉전 잔재를 악용하는 수구언론의 위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언론개혁이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화는 먼 이야기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작년 8·15사면 직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⁸⁵⁾를 통해 사면 출소자에 대해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사면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공언하였다. "출소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 공안부 검찰 나름의 심사를 거쳐 적당한 것"이라며 보수주의자들을 위로하고, 이에 덧붙여 "보안관찰법에 의해 사후(事後) 관찰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준법서약 때문에 공안에 허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안관찰법 덕분에 공안의 허점이 없으리라는 보장 하나만으로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의 방식과 범위가 보여준 허위에 대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가장 검거에 주력하는 대상이 국가보안사범이지만,⁸⁶⁾ 복역 후 사찰도 역시 국가보안사범을 제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95년의 자료를 보면 범죄에 있어서 전과자·우범자로 분류되어 사찰을 받는 대상자 수가 1만 4,686명인 데 비해,⁸⁷⁾ 1994년 보안관찰을 받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즉,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6,189명에 이르렀다.⁸⁸⁾ 단일 범죄군으로서 최대의 감시 대상인 것이다. 보안관찰법이 그 처분 대상자들의 가족, 친지들을 공식적으로 관찰업무 관련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보안관찰법의 대상자는 수만 명에

85) 『석방된 공안사범들 보안관찰법에 의해 계속 관찰하겠다』, 『월간조선』, 1998. 9.

86) 국가보안사범의 양산(量産)에는 전투경찰 등 전체 경찰직의 절반 이상이 공안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점,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정권의 친화성을 입증하는 상납품으로서 공안사범을 배출해내는 출세주의적 공안 검·경찰의 활약,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 불명확한 범조문의 고무를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부분들을 거세하는 데 이용되는 법인 정동이 기여하고 있다.

87) 1995. 10. 6. 14대 국회 본회의(177회, 3차)에서의 내무부장관의 답변서 중에서.

88) 이 숫자의 근거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함.

이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그러나 보안관찰법의 폐지 없이는 '모든 가족이 피보안관찰자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

2. 보안관찰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보안관찰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⁸⁹⁾(보안관찰법 제3조)이다. 3년의 선고를 받았으면 총분하고 실제 복역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대상자는 단지 '대상자'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대상자는 출소선고, 출소시실신고, 변동시형선고 등을 통해 각종 사생활 자료를 당국에 아뢰고, 그 신고 기간(7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안관찰 해당 범죄'라는 것에는 국가보안법이 범죄로 삼는 거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형법 등 다른 법의 반국가범죄들도 포함된다. 게다가 가이미 폐지된 한국전쟁 당시 법률들도 포함된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는 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3조)와 단순고무친양죄(제7조)와 허위사실날조유죄(제4조 1항 6호)만이 제외된다.⁹⁰⁾ 기타 법률에는 형법과, 폐지법률인 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구 국가보안법,

89)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왜 해당범죄 목록에서 빠졌는지는 입법 자료를 뒤져보아도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다른 범죄의 위반 없이 반국가단체구성죄만으로 복역한 이들은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않는다.

간혹에서 무덤까지, 보안관찰법

— 김대중 정부 1년, 보안관찰법 평가

1. 당신의 출소를 기다리는 또 다른 감옥

출소한 양심수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 가족과 민주적 양심들만이 아니다. 보안관찰법은 가나긴 수형생활 끝에 감옥 문을 나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교도소 문앞에서부터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 회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한 옥살이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출소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마저 침입하는 보안관찰법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정 기간 몸을 구속하지만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한다.

새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이 부끄럽게도 응당 조건 없이 출소하여야 할 양심수들에게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부당한 거래를 고집하고, 회한의 준법서약을 받아내고 나서도 다시금 피보안관찰자의 딱지를 붙이려 한다. 국민의 정부 이후 누가, 얼마나 많은 사면 출소자가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법무부는 피보안관찰자의 숫자마저도 국가기밀로 취급해 일체의 실태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위헌적 법률의 개정·폐지권을 국민의 손으로부터 탈취하고 있다.

202

보안관찰법의 임권은 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가 신고, 제범방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최고 1~2년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2년 기간의 보안관찰처분이 평생토록 무제한(1) 갱신될 수 있게 한 것(제5조 1, 2항)이다. 보안관찰처분은 이뿐만 '관찰'이지 형벌을 포함하는 강제조치들로서 기득 차 있으며, 현재 이마 서준식씨, 방양규씨, 기세문씨, 문규현씨, 홍중희씨 등이 보안관찰법상 신고위반죄로 처벌되었거나 기소된 상태이고, 이 법이 입법된 이래 현재까지 취지 않고 갱신처분을 받고 있는 이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단적으로 법률 용어로 표현하지면 보안관찰처분은 '자유제한적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처분'인 것이다.⁹⁰⁾

3. 김대중 정부의 보안관찰처분

1) 특별사면과 보안관찰처분

김대중 대통령의 세 차례 특사(1998. 3. 13, 8. 15, 1999. 2. 25.)를 통해 각각 74명, 94명, 43명 등 211명이 출소하였다.⁹¹⁾ 현재까지도 구속·수감되어 있는 양심수의 수는 민가협이 집계에 따르면 206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래 760명의 시국사범 구속자를 양심화였고, 이 중

90) 다만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92) 서준식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적 근거는 보안관찰처분이 경미한 자유제한적 처분이라는 것이었다. 판결의 내용은 이 글의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다.

93) 『인권학보소식』, 1998. 3. 13, 8. 14, 1999. 2. 25.

반공법, 구국당경비법, 구 해안경비법상의 일정한 범죄들이 포함된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보안관찰법 제4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이른바 '피보안관찰자' 또는 피처분자가 된다. 보안관찰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 즉, 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고, 검사와 경찰이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한다. 일반 범죄와 전주어 말하자면, 기소하고 재판하고 집행하는 일이 법무부 단독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 이전에 소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모든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유명무실한 절차일 뿐이다.⁹²⁾ 보안관찰 대상자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기까지의 시한은 법정되어 있지 않아서, 평생 어느 때고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영구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런데 과연 보안관찰은 '관찰(觀察)'인가. '보고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보안관찰처분은 보고 살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먼저, 피보안관찰자는 원시신고, 변동사항신고를 하여야 하고, 3개월마다 정기신고, 주거지 이전 신고, 여행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사항은 '대상자'의 신고 사항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상세할 친해적인 항목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정기신고는 3개월마다 행하는 것으로, ① 3개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②

90) 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기껏 서면진술만에 그치는 것이고,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신청서를 송달받고 7일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란 사실상 의미 없는 절차이다.

122명이 1999년 3월 10일 현재 구속·수감되어 있다. 즉, 현재 구속수감된 206명 중 84명이 이전의 정부가, 122명이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낸 양심수이다.⁹³⁾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의 양심수들에 대해서는 선별 사면이라는 방식으로써, 자신이 만들어낸 양심수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을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 등 정치악법들의 정당성을 승인했다. 세 차례 특사로 풀려난 211명 중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실사가 없지만, 현재 민가협 자료상의 구속자 건명을 보아 판단할 때 3·13 석방자 74명 중 43명, 8·15 석방자 중 45명, 2·25 석방자 중 25명 등 113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의 한총련 등 학생사건 관련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다.

이미 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이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법무부는 1998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특사 석방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씨, 이경섭(“)씨에게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했다. 1999년 들어 서도 특사 석방자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정화려(구국전위사건)씨, 함정희(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황인오(“), 특별감형으로 출소)씨, 손병선(“)씨, 우진성(“), 민기)씨, 은재형(“), 민기)씨, 박동운(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특별감형으로 출소)씨 등이 처분을 받았다. 한정덕(사노맹사건, 민기)씨, 황대권(구미유화생사건, 특별감형으로 출소)씨는 현재 처분청구 중이며, 그중 이해정씨는 출소사실신고⁹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재

94) 민가협이 제시한 3월 10일 현재 미적방자 명단에서 집계하였다. 명단은 인터넷사이트, <http://www.jinhoo.net/~freedom/kukbo/conscience/MyHTML.html> 참조.

95) 이는 이미 처분을 받은 사람(피처분자)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출소사실신고를 출소 후 7일내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보안관찰법 제27조)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③ 3개월간에 여행을 한 경우 그 사항, ④ 관찰 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법 제19조 2항) 등이고, 별도로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① 주거지 이전예정지, 이전예정일, 이전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② 국외여행의 대상국·여행목적·여행기간·동행자·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기타 필요한 사항을, ③ 국내여행의 목적지·여행목적·여행기간·동행자·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신고 외에도 피보안관찰자는 담당기관(검사·경찰이다)의 감시·탐문 등 소위 '지도'를 받고, '재범방지조치'를 당한다. 지도란 한마디로 '격렬한 지시'이다(제19조 1항). '지도'라는 이름으로 온갖 종류의 간섭이 행해진다. 이사 방해,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추적, 동네 주민들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 등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출타나 교제를 만류하거나 협박한다.

지도 중에서 특히 보안관찰법이 명시한 방법이 제범방지조치다. 그 내용은 ①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 통신을 금지하는 조치, ②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 ③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 장소에의 출입을 요구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제19조 2항). 그러나 이 규정은 과잉적 용되고 있다. "모월 모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참석하지 말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등의 취지의 조치장이 발부되고 있는 실정이다.⁹⁵⁾

91) 조정은씨는 1996년 10월 18일에 12월 15일에 열릴 위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 특별한 이유인즉 행사에 참석하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과

본지산에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및 피 처분자들에게 대한 동태파악은 평생 계속되며 모든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게 되어 있다. 보안관찰 업무는 경찰서의 보안2계의 소관업무이다. 공안 사범의 내사, 수사, 체포에서부터 이른바 '교화'까지 같은 검사·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⁹⁸⁾

보안관찰의 구체적 집행에 관해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특별히 변모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어, 아래에서는 1998년 상반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보안관찰처분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여 수집한 실태자료를 종합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1)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전

'대상자'인 것만으로는 원배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은밀히 동태 파악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상자는 출소와 함께 출소신고를 하라는 외압에 시달린다. 김영기씨의 경우 초동화생 자녀들까지 경찰의 무례하고 거친 전화로 시달림을 받았다(1997년). 각종 무례한 전화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홍중희씨는 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신고를 안했던 것인데도 법 제27조의 신고위반죄로 기소, 처벌된 적이 있다(1997년).

98) 경찰활동과 '교화' 활동은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이를 같은 기관에게 담당하게 한 것은 결국 공안사범의 색출과 처벌이라는 목적을 위해 보안관찰처분 수단을 삼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나라도 '재사회화' 작용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판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 받았다. 보안관찰처분은 출소 후 1년이 지나 서야 처분결정이 내려진 선례(이은경씨)도 있고, 법률이 출소 후 처분에 이르는 기간을 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언제든 처분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2) 그의 김대중 정부하에서 내려진 보안관찰처분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만기출소하게 된 양심수 중 이혜정(양복사건)씨, 박영희(“)씨, 김삼석(남매간첩사건)씨, 손민영(손병선씨 사건)씨가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정민주(양복사건)씨는 현재 처분 청구를 받은 상태이다. 특히 김삼석씨는 1998년 가을, 출소사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신고위반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서에 강제로 긴급동행당하기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에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혜정, 박영희, 김삼석씨는 현재 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온 이들도 보안관찰법에 관한 정부정책이 강화되었으면 되었지 완화되지는 않은 이상, 김대중 정부가 발부한 결정서를 받아 보게 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석씨는 사회안전법 시월부터 쉬지 않고 보안구금 또는 보안관찰처분을 당했고, 오는 6월 갱신을 앞두고 보안관찰갱신처분 신청서를 받아 둔 상태이다. 현재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6,000명을 넘고, 처분을 받은 이들의 숫자도 적게 잡아 700여 명으로 추산되고,⁹⁹⁾ 보안관찰처분을 한번 받은 사람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거의 예외 없이 갱신처분을 받고 있음을 볼 때 1999년 내 갱신이 예정된 이들의 숫자는 350여 명¹⁰⁰⁾에 이를 것으로

대상자는 동태보고의 대상이 되지만(시행령 제5조), 법이 어떠한 직접적 강제력 행사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처분 대상자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거나 직접 찾아와 탐문하는 등의 위법을 행하고 있다. 이일재씨는 처분 면제자인데도(처분 대상자에 불과하다) 본인과 가족들이 전화 탐문으로 시달리고 노동절 집회에서의 참가를 방해하는 기법방문을 받았다(1998년).

조사 대상이 되는 내용은 법무부 해설서에 따르면 무려 112개 항목에 달하며,¹⁰¹⁾ 이는 "신문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종교사항),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게 된 경위", "미전향 이유", "전향하지 않으면 불리하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미전향자 신문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조사 앞에는 헌법상 양심추지(良心推知)의 금지 원칙은 후지죽일 뿐이다. 이 경우 교묘한 유도심문 때문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방어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여념도 없이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내몰리게 된다. 이은경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자신의 사상이 전향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전향 거부로 취급되어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1998년). 전향의 의미 부여에도 문제가 있다. 당국은 미전향자에게는 미전향을 이유로, 전향자에게는 전향유지를 이유로(정순덕씨, 수희 갱신, 안운정씨, 1999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한다. 법은 검사 외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심문조사권을 주고 있지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검사의 제출서류 외에 직접 심문조사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국의 절차 위반은 갱신결정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안화섭, 강중건씨는 갱신 처분청구서 송달도 없이 갱신 결정을 받은 했다.

99) 법무부, 『보안관찰법 자료집』, 법무부 검찰국, 1989, 330~338쪽.

생각된다. 보안관찰법상 신고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사범의 도마에 올려진 서준석씨, 기세문씨, 문규현씨, 한세환씨, 방양규씨, 홍중희씨가 외로운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은경, 정명섭씨 부부의 경우 1심(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후(99. 4. 8.)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4. 보안관찰 집행 실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공언하였듯이, 특사와 함께 보안관찰법은 때를 만난 듯 비뚤게 실효를 과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 출소자들 중 보안관찰 해당 범죄로 선고형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없이 보안관찰법에 따라 출소시 출소신고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도소, 주 소지·거주지의 검찰·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이며, 보안관찰처분의 부과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종 내사 자료들이 수집되고 편철되고 있었을 것이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교도소장의 우연한 직무해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출소 전 출소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소하고 있고, 교도소장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재판자료, 행정자료들은 보안관찰대상자가 출소함과 동시에 거주지 경찰서와 파출소로 보내진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면 실제 그 집행은 담당 검사 및 형사(경찰서 보안2계)와 피처

96) 1994년 국정감사때 당시 보안관찰 대상자는 6,189명이었다는 내부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서준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인권취부소식」을 통해 1993년 당시 고위 공직자로부터 대상자는 약 3,000명, 피처분자는 약 700명으로 집계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밝힌 바 있다.

97)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절반씩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289

289

5. 소송과 판례

최근 보인관찰처분의 취소 소송이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장민성씨, 고원씨, 이은경씨, 정명섭씨 등이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안운정씨, 이해정씨, 김삼석씨, 박영희씨가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장민성씨는 1998년 6월에 1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1999년 2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장민성씨의 경우 검사가 보인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재범 사유는 "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② 자택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③ 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강 ▲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④ 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⑤ 검찰의 소환조서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회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①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은 보인관찰 해당 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②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③ 강 ▲윤 등과 만난 것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이 아닌 보인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 있는 어떤 활동이라 볼 자료가 없고, ④ 미혼인 상태에서 누나의 집에서 동거함을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그와 같은 사실판단의 결과, "자신의 과거 범죄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사정은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가 기왕에 범한 보인관찰 대상 범죄인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죄 또는 다른 보인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충분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아무 것도 없다."¹⁰⁰고 판시했

2) 보인관찰처분의 집행 실태

보인관찰 중에는 위에서 말한 소위 '지도'로서 통상 전화, 방문, 현장 시찰 등의 방법으로 탐문을 하거나, 이러한리한 외출이나 교제를 삼갈 것을 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형적인 수많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주거수색을 하거나, 심지어 동태에 소문을 내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기도 한다(최선용씨, 1998년, 김용규씨, 1998년). 새벽 5시, 밤 12시 등 아무 때고 취침시간까지 방해하는 전화는 다반사이고(김양기씨, 1991년), 예고 없이 집에 들어닥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김삼석씨, 1997년).

탐문은 보통 피보인관찰자가 집회 등에 참석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의 동태 파악에 집중되어 있다. 전화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때는 당국은 동거인, 부모, 친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옆집 주인(안희섭씨, 1999년), 직장 동료(강종건씨, 1994년), 통·반장(김동수씨, 1990년)에게까지도 이들이 "위험한 사람", "간첩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알려 검시·밀고꾼으로 만들고, 구청생활보호 담당 공무원까지 사주해 동거자에게 보내어 "무슨 정이라도 있는 관계나"는 등 사생활을 캐묻는 조사를 벌인다(김영만씨, 1998년). 최선용씨는 경찰이 "최선용씨가 간첩 전력이 있는 자"라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바람에 결국 퇴거를 당해 수백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1997년). 최선용씨는 또 "집주인에게 신고를 받고 왔다"며 영광 없는 가택수색을 당한 적도 있다(1998년). 1998년에는 여형으로 출타 중이었던 김용규씨 집에 보인관찰 담당행사가 찾아와 불법적으로 열쇠를 맡고 주거침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가장 빈번한 요구는 어디를 나가지 말라거나 누구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행사가 무조건적이고 노골적으로 여행에 동행하거나(신귀영씨, 부

다. 2심에서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장민성씨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확정지었다.

그러던 1998년 12월 17일에는 고원씨가 다시 보인관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법무부 측의 주장은 고원씨가 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② 전향을 거부하고 있고, ③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④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가족관계, 출소 후 동향 및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일이 없고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한...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시 보인관찰 대상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원씨가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점, 장학금을 받으며 수확한 점, 보인관찰 대상자 동태보고서에 "특별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중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원씨 역시 법무부측의 상소로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장민성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은경, 정명섭씨 부부 역시 1999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인관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소송 중인 안운정씨의 경우는 보인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법무부가 취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처분결정서를 송달한 하지가 있음, 이미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형성됨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보아 자신의 과거 행위가 범죄로

100) 서울고법 97구10170 보인관찰처분취소결정 1998. 6. 18.

887

신에서 영등포까지, 1996년), 양심수 석방 환영대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형사가 집안에 들어왔을 사례도 있고(최종원씨, 1988년), 또한 빈번한 것은 정치활동의 제약이다. "전민련에서 활동하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하고(서준식씨, 1991년), "6·25 관련 강연을 하지 말라"(김영태씨, 1996년)고 하기도 한다. 법이 단순히 사후보고만 하도록 한 국내여행에 대해서도 사전에 실력으로 방해하기까지 한다(류연철씨, 1997년, 안희숙씨, 1997년). 보인관찰 담당관과의 전화는 대부분의 경우 극심한 모욕감을 준다고 한다. 형사들이라는 점을 보면 쉽게 상상이 간다. 허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 있다면서, "광주 연락을 못 받았느냐? 모임을 빌미로 반정부집회를 연다는데?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살짝 귀뜸을 해달라"(신귀영씨, 1998년), "단식원을 왜 열려느냐? 무슨 회라도 조직하려는 거 아니냐"(기세문씨, 1991년), "딸이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조사를 받게 하라"(이은경씨 부모, 1997년), "정씨 들어 그냥 전화한 거다. 잘 계시느냐?"(임종석씨 어머니, 1998년)

보인관찰범에는 재범방지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런데 법은 특정집회, 특정인과의 회합을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서만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고 재범방지조치로서 행해지고 있다. 지인의 방문인을 금지하는 조치서(서준식씨, 1991년), 특정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피보인관찰자 일반과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조치서(조창순씨, 1995년) 등이 그 예이다. 조창순씨의 경우 조치서는 "① 양심수를 위한 사회노래의 밤에 참가하여 보인관찰처분자와 회합하는 것은 보인관찰범 위반이므로, ② 보인관찰처분자와 회합 통신을 금한다"고 적고 있었다.

피해나간 것이고, 특히 보안관찰법에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 보안관찰법의 인신구속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미하고도 교육적인 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작동 논리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6공이 그 위상을 선물한 데 대한 보답으로 보안관찰법이라는 6공의 입법상 과오에 면죄부를 주어야만 하는 것도 같다.

1999년 들어 보안관찰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이색적인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¹⁰² 구 국방경비법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의 취소처분을 구한 인화섭씨에 대해,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년 8월 4일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 법령과 정부 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 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년 7월 5일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 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위 법은 적법하게 제정, 공포되어 유효하다"고 하고, 아울러 보안관찰법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부적법하게 공포된 법이라도 어쨌든 유효하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및 미군정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여부를 시족이라도 되는 듯 아무런 심리 없이 합헌이라는 결론만 덩그러니 제시하고 말았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할 수는 없다"¹⁰³며 제2헌국을 다짐

102) 대법.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03) 박상천 장관의 위 인터넷부 중에서.

취급될 수 없음, 처분의 근거자료인 재소자 관리카드에 밀입북, 당원 가입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함, 전과 사실 삼석씨, 이해정씨, 박영희씨는 비슷한 시기에 처분을 받아 지난 3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김삼석씨의 이해정씨의 경우는 출소 직후 출소사실인고를 하지 않아 법정 싸움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다 공세적으로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이 시범부에 의해 잇달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그나마 시범부라도 당국의 자의적인 처분 남용에 제동을 걸어 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재범이 없는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 즉 재범의 위험성이 "개연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원칙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었다. 보안관찰법과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기준이 어찌서 처분결정 당시에는 무시되고 시범부에 가서야 확인되고 있는가, 나아가 그런 판단을 왜 애초에 법무부가 행하게 맡겨 놓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발하는 사태인 것이다. 그런데 보안관찰법의 법적인 문제점은 그뿐만 아니라 보안관찰법 자체가 갖는 총체적 위헌성일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보안관찰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위헌법률심사제정을 거부하거나(서준식씨, 1991년), 보안관찰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안화섭, 대법 1999. 1. 26. 선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관찰법 자체가 갖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속성은 처분결정이 법무부의 사항이라는 점 외에도, 검사가 작성한 처분신청서에만 의존하여 처분이 심의·의결되게 한 점, 만기 출소자를 주대상으로 하여 처분을

하는 당국자의 엄숙한 선언은, 사상전항은 위헌이되 준법서약은 합헌이고, 사회안전법은 위헌이되 보안관찰법은 합헌이라고 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계략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안관찰법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에 재판을 구하는 이들은 무슨 실낱 같은 희망 때문이 아니라, 허언과 기만으로 위장한 법의 자기모순을 고백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6. 보안관찰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안관찰법의 역사가 그리 짧은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아마도 사실상 사회통계 효과는 법 적용의 폭이 넓은 국가보안법이 훨씬 클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건강 한 사회 비판 정신을 갖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이미 국가인보시범으로 확인도장을 받은 출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추수에 잘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행동이나 언행을 판단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사상 그 자체를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억압적인 법이고 실제로 일단 구속 처벌된 적이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토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훨씬 더 비인간적인 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사회보호법을 보안관찰법으로 개정하던 1989년 당시 사회안전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포기하고 밀실타협으로 보안관찰법의 입법에 동의하여 준 원죄를 반성하지 않고, 현재는 스스로 집권여당으로서 그 법을 보호막으로 삼아 양심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여야 타협과 진보·보수의 단결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는 슬로건을 평

부피하게 하고 제차 삼차 갱신하게 한 점, 각종 신고, 조치 등으로 대상자의 사생활 및 정치적·사회적 생활을 제약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점, 무엇보다 사상의 교정과 감시라는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자체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제2조¹⁰¹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서준식씨가 제기한 보안관찰법 위헌적 법 현실을 외면했다.

서준식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핵심은 ① 보안관찰처분은 대장치의 "사회적 위험성"을 그 처분의 본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 중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자의 교육 개선과 국가·사회방위를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는 것, ② 보안관찰처분이 그 본질이 헌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이 법의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1항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 ③ 그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처치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④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 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보안관찰제도를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하여 구태의연하게도 소위 보안처분이라는 일반론으로 논점을

101) 헌법재판소, 92헌바28, 1997. 11. 27.

창립선언문

1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향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느냐 아니면 전근대적 암흑사회의 멍에를 짊어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가위눌린 사람처럼 늘 공포에 떨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했다.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를 제약당했으며, 언론인은 진실을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해왔다. 예술가는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접어야 했으며, 서민은 술자리에서조차도 주변을 살피기에 급급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 한가운데에는 결국 언제나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이런 답답한 상황과의 결별을 소망해왔으며 국가보안법의 질곡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해왔다.

2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및 그에 뒤이어 집권여당이 발표한 국가보안법 대폭개정방침은 비록 큰 만족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오랜 세월을 국가보안법의 그늘에서 신음해온 우리에게 분명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였다. 작년 말, 유엔 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한 이후 시대변화 속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는다는 사실, 그것은 곧 인권이 억압된 낡은 시대에서 인권이 구현되는 새로운 시대에의 도약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그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란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아무런 이성도, 합리성도, 염치도 없이,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이 나오자마자 또다시 회오리친 색깔공세는 바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암흑사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오랜 소망은 다시금 짓눌리고 국가보안법은 또다시 기만적 소폭 개정애 그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계로 민주화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눈감아 주지 않는 것이다. 늦기 전에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이행하고, 그 첫 번째 작업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전면 폐지라는 점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당분간은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취소 판결까지가 법원이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최대한일 것이다. 머지않아 법원의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금 법무부가 처분을 명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은 그와 같은 악법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술을 시대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는 기득권세력의 한낱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9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냉전체제는 무너졌다.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북한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그 심각한 식량난을 목도하면서, 수많은 언론인·체육인·예술인·기업가·종교인들의 합법적인 방북을 목도하면서, 남북합작투자와 금강산 관광을 목도하면서, 그래도 '적화통일'의 위협과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국민 대다수는 적어도 국가보안법 최악의 독소조항 제7조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4

국가보안법, 특히 우리는 제7조가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 바로 7조이며 UN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7조이며,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약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은 7조 폐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최소한 7조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 연대의 힘을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적극 찾아 나설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굳게 자각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1999년 9월 20일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방향에 관하여

서울변협 변호사
이진우

1) 국가보안법개정의 기본방향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국민들의 중대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이번에 제기될 보안법개정안의 핵심은 동법 제 7조(찬양고무죄)의 수정과 제 10조(불고지죄)의 폐지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에 "보안법 제 2조 반국가단체조항개정을 포함한 대폭개정방침에서 소폭 개정으로 일보후퇴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본심이 국가보안법의 중요부분을 변경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사실이 하나 있다.

국민회의의 전신인 평민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당력을 총집결하여 이를 추진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그 당시 그 당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민주질서수호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률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명분용법안이라고 생각했다.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평민당이나 그것을 승계한 국민회의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순리의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국민회의의 이번 "대폭개정계획"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는 금년 4월에도 국가보안법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보안법의 처벌대상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서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태"로 바꾼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국가안보보전의 기준을 남에게서 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얼핏 들어보면 말이되는 논리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무서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개정전의 국가보안법(법률제 3318호) 제 7조(회합·통신등)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 동법제 6조(잠입·탈출) 제3항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현행 국가보안법(법률 4373호--1991. 5. 31 개정) 제 6조와 제 8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제 5조 제 2항(금품수수) 및 제 7조(찬양·고무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현행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이외에 달리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에 이로운 행위"란 개념은 어디에서 도출된 것인가? 국가보안법의 목적(제 1조)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의 명칭도 "북한이 익행위처벌법"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이 "북한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결과 "그 동안 정권유지 차원에 악용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단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행 형법 제 99조 (일반이적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우리형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와 "적국에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구별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선도 역할을 할 따름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동의어(synonym)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동어반복(Tautologie)" 아니면 유개념(Gattungslegriff)일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어휘들을 논리적기교를 부려서 굳이 반대어(antonym)로 규정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반대론에 부딪친 정부의 지난번 국가보안법 개정 명분이 소리없이 자취를 감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전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논리를 피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수정을 하려는 강력한 목적의식 때문에 실정법의 내용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개별조문에 대한 문자적표현의 개정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관한 근본문제를 다룸으로써 공명정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법률개정안의 내용

정부나 여당은 법개정안의 구체적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편 의상 국가안보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당위원이 "보안법개정 미룰시간 없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기고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그 기고문이 제일 먼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정의(제 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게되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은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접촉,대화, 교류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한다.

기고문의 둘째 논리를 옮겨본다. "제 7조 1항 찬양고무죄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때문에 공안당국의 자의적 확대해석과 선별적용을 놓고 인권차원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전개됐다. 처벌대상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논리들은 법무부가 개발한 논리 즉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론 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것이다.

우선 "반국가단체"론을 살펴본다.

민사상의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은 지위와 이름때문에 저야 할 경우가 많다. 행정부의 장관이 그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장관이 그 불법행위에 가공을 하였는가 또는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관이라는 이름과 지위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위의 책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형사책임의 실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는 때에만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회의장소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대화자이다.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하?? 동안 그들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갈등을 일으킬 일도 전혀 없다. 논리면 모두 논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궤변은 무논리보다 못하다. 무논리는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상호 아무런 충돌이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남.북한 관계의 기본법이자 최고의 법률이라고 한다면 대북관계에 관한한 국군병력이 왜 필요하며 방대한 규모의 국방부가 무엇때문에 있어야 하는가? 북한이 대남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국군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형법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것(제 54조 제 2호)은 물론 "적" 또는 "원수"로 규정(제 52조의 제 1호, 제 53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국가단체" 규정만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반국가단체"란 어휘는 논리적으로 사물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적"이나 "원수"라는 어휘는 감정적으로 "증오"와 "저주"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들의 "적"과 "원수"는 엄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반국가단체"만은 곤욕을 치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기고문의 주장처럼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의 그 동조세력이, "반국가단체"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부정과 국가변란을 추구하는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단체"로 바꿔놓으면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대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기뻐할 것인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이지 "반국가단체"개념의 수정이 아니다.

다음으로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개정론을 살펴본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러하다.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죄)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규정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애매한 표현이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억지논리에 터잡은 것이라는 점을 살피기 위해서 찬양고무죄의 연혁을 살펴본다.

1980. 12. 31자 개정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인권옹호하는 명분아래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다. 행위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행한 행위에 대해서 고무, 찬양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인식이 구성요건적 처벌요건으로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1. 5. 31.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은 그 제 7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국가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찬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 5조 제 2항, 제 6조 제 1항등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인권옹호차원에서 개정첨가한 구성요건이 개정된지 8년만에 지나지 아니한 이 시점에 와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요 궤변만능주의의 발로이다.

3) 국가보안법과 인권옹호문제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상의 "애매"한 용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한 편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사례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으로 법집행상의 잘못을 문제삼기 시작하면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가릴 것 없이 살아 남을 법이 몇이나 될 것인가? 더구나 그 법을 집행한 기관중 국정원, 검찰, 법원, 경찰, 세무서등을 가릴 것 없이 면책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 것인가?

침해된 인권은 개별적 절차를 거쳐서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과 논리로 기관과 법률에 대해서 제도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보안법은 제 1조 제 2항에서 "이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 7조 (찬양고무등) 에 대해서 소위 한정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봉쇄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검찰과 법원이 으레히 인권침해처분을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능성의 배제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법을 근원적인 악법으로 보거나 소위 "독소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일부인사들의 무책임한 논리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반정부인사를 괴롭히는 정권안보법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이 양심수로서의 특별대우나 명예를 요구하게 되는 기상천외의 사회풍조를 야기하고 있다.

4) 국가보안법개정의 종착역

제안이 태동중에 있는 국가보안법개정안에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안법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구성요건의 투명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씨가 국가보안법과 현정부를 보고 있는 그의 시각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 요지를 살펴본다.

"현정부는 선과 진리의 잣대를 쥐고 국민을 강제하면서, 과거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반대세력을 불순세력,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의 대명사이며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입장에 반대하는 양심인사를 반국가사범으로 만드는 도구이다.

1998년 말 현재로 현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동안 310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하였다. 이것은 김영삼정권 초기 8개월동안 구속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67명보다 4배나 많다. 결국 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정치적 반대세력인 학생과 노동자, 재야세력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법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폭력혁명선언과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주장이다. 국가를 폭력의 주체로 보는 것은 공산주의혁명론의 출발점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폭력으로 본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권위와 가치를 깡그리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체제전복자들

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폭력이나 다 같이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우열은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체제전복과 혁명은 국가권력폭력론에서 정당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시"이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우리가 피와 땀 그리고 생명을 바치면서 지켜야 할 최고지상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반대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여 박멸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그런데 박래군씨는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반대하고 이를 전복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의 자구수정을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 사람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지나친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론을 제기할 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박래군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정부가 양심의 자유보장을 극대화한다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생각이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박래군씨는 현정권이 김영삼정권보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양심범의 구속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독단적인 단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현정권의 포용적인 정책 방향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언동을 과감하게 표출한데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인 현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격렬한 자유민주주의체제 비판론자들이 횡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와 여당도 너희들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의 제약때문에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참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면 국가보안법 사수론자들에게는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엽말단적이 법률용어의 정리에 그친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들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이번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적 타협안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의미가 전혀없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론을 가라놓는 혼란끝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1991년 국가보안법개정후에 우리국내의 안보사정이나 남북대치관계에서 또 다시 그 법의 개정을 논의해야 할 정도의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한 반도무력통일 정책이나 그것을 위한 도발행위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강도높은 그들의 주장뿐이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유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1999.8. 21. 김영환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91년 북한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하여 김일성별장에서 이틀동안 묵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김일성과 두 차례 면담하면서 "남조선혁명" 방안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피구속자측에서는 국정원의 발표내용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주장의 진위는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민주와 국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현정부의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이룩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 개인의 느낌이다. 느낌이라고 해서 근거없는 감정적 판단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간에 이 사건을 위요해서 앞으로 일어날 논란의 내용은 뻔하다. "김영환은 양심인사이고 선량한 국민인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를 반체제 인사로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탄압의 주범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독소적 악법이다. 그 중범은 양심인사를 기소한 비양심검사와 그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비양심법관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말이다. 이러한 부끄럽고도 비극적인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이 이번의 국가보안법개정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불투명하고 애매한, 자세를 보여주는 한, 이것은 영원히 존속될 우리의 아픔이 될 것이다.

5) 양심범의 개념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양심범이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적인 애국인사를 범인으로 만드는 법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양심범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 특히 검찰은 우리나라에는 양심범이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주장의 양극단현상을 살펴볼 때 있어서 엠네스티가 내어 놓은 양심범의 정의는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엠네스티가 보고 있는 양심범의 실체는 이러하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된 자"라는 것이 양심범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심범의 개념에 부합하는 재소자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의 양심범의 개념구성은 두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어근의 내용부터 살펴본다. 우리나라 교도소안에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 언어,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신념"의 차이때문에 구금된 사람은 있지 아니한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아 위 개념규정의 첫째어근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교도소안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말이나 글로) 옹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재소자"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신념(공산주의 신념까지 포함하여)도 말과 글로써 표출되지 아니하고 양심(?)의 영역에 머물러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Gedanke ist nicht zu bestrafen).

그렇다고 하면, 정부와 검찰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한다는 평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는 양심범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심적인 확신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살펴 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있다. 종래 국회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양심범석방결의안이 발의되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발의안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 석방결의안에 양심범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석방대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석방결의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 그

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석방대상자를 정하지 아니한 양심범석방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교도관은 교도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양심범은 모두 나오라"라고 말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재소자들은 모두 자신이 양심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교도소문을 나서려고 대소동을 벌였을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양심범이란 어휘가 법률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대개의 경우, 법률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를 대동한다.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법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는 의미를 가진 죄형법정주의는 현대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금과옥조가 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철학이다.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평가에 따라서 범죄와 형벌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한다는 철학이다.

재판이 죄형법정주의라고 불리우는 엄격한 법률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 수행자에 대한 처우와 명칭도 엄격한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심범이란 명칭은 법률주의의 소산이 아니다. 정치주의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를, 여하한 경우에도, 양심범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엠네스티가 정의하고 있는, 양심범이란 이름의 재소자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우리 국민중에는 오판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그 오판의 피해자가 바로 양심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개념의 혼동을 동반하고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재심제도에 의한 구제절차를 받을 사람이지만 양심범은 아니다. 양심범은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서 이 호칭을 잠시 차용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심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소극적으로 오판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양심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심범이란 개념을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양심범을 기소한 검사는 비양심검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양심범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부도덕 판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비양심검사와 부도덕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는 파렴치한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정부가 존재해서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양심범이란 어휘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 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그렇다" 이 하나 뿐이다. 그러나 굳이 양심범론자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신범"(Ueberzeugungssverbrecher)이다. 얼마나 떳떳한 명칭인가?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확신범이다. 필요하면 이들에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시국사범" 또는 "공산사범"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당당한 명칭을 두고 "양심범"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명칭을 따르더라도 "범인" (Verbrecher)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심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범"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사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지도자를 국가가 불법구금을 한 것이 되므로 마땅히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래서야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